

<http://www.maf.go.kr>

농 산 물 품 질 관 리 법

2007. 8

농 립 부

“ 농업· 농촌 사랑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제 · 개정일자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制定 1999. 1.21 法律第5667號	제정1999.6.30 대통령령 제6444 호	제정 999. 8. 9 농림부령 제39 호
改正 2000. 1.21 法律第6191號	개정2001.3.27 대통령령 제7165 호	해양수산부령 제9 호
2001. 1.26 法律第6378號 (親環境農業育成法)	(海洋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5.29 대통령령 제7230 호	개정 999.12.31 농림부령 제54 호 (농업 농촌기본법시행규칙
2001. 1.26 法律第6380號 (人蔘産業法)	2001.6.22 대통령령 제7242 호 (인삼산업법시행령	2001. 3.28 해양수산부령 제15 호 (海洋수산부와그소속기관
2001. 1.29 法律第6399號 (水産物品質管理法)	2001.9. 1 대통령령 제7351 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직제시행규칙 2001. 6.30 농림부령 제91 호
2002. 1.14 法律第6595號	2002.7.13 대통령령 제7674 호	해양수산부령 제2 호
2002.12.26 法律第6816號	2003.7.29 대통령령 제8071 호	2001. 7.31 농림부령 제95 호
2005. 8. 4 법률제7675 호	2006.1.16 대통령령 제9279 호	(친환경농업법시행규칙
2006.12.28 법률제8103 호	2007.6.26 대통령령 제10103 호	2001.10. 8 농림부령 제100 호
		2002. 7.22 농림부령 제21 호
		2003. 9.25 농림부령 제47 호
		2006. 1.25 농림부령 제15 호
		2006. 6.30 농림부령 제29 호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7. 6.29 농림부령제61 호</p>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목차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제 조(목적)	제 조 목적	1
第2條 (定義)	제 조(농산물의 범위)	제 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第3條 (品質管理審議會 의設置)	제 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3
	제 조 삭제		
	제 조(위원장의 직무)		4
	제 조(회의)		
	제 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제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5
	제 조(분과위원회의 회회)		6
제3 조의2 (심의회의 직무)			
	제0 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7
	제1 조(위원의 수당 등)		
第2章 農産物 의 規格·品質認證 등			
第4條 (標準規格化)		제 조 표준규격의 제정	8
		제 조 표준규격의 시험의뢰	9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第5條 (品質認證)	제2 조(품질인증의 기준 제3 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제4 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 조 표준규격의 고시 제 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 제 조 삭제 제 조 품질인증의 신청 제 조 품질인증의 절차)등 제 조 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등	10 11 13 14
第6條 (品質認證 의 有效期間)		제 조 유효기간의 연장	15
第7條 (品質認證機關 의 지정 등		제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등 제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도 감독 제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16 17 18
제7 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제4 조의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제4 조의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제4 조의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등	제 조의(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등 제 조의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 방법)등	19 20 22
제7 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 조의(유효기간의 연장 제 조의(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	23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제7 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8條 (地理的 表示 의 登錄) 제9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제10條 (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제7 조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25
		제7 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28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29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33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34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7 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35
		제7 조의5 (유효기간의 연장)	36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등	38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39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40		
제8 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41		
제8 조(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42		
제9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42	
제10條 (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45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第11條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9 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46
第12條 (農産物 의 安全性調査)	제10 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제1 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47
	제11 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第13條 (試料收去 등		제2 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49
第14條 (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措置)	제2 조 (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		50
	지 및 처리방법		
第3章 原産地 등의 표시			
第15條 (原産地 의 표시)	제3 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제3 조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	52
	제4 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제4 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53
	제5 조(원산지의 판정기준	제5 조(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54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	제6 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		59
	제7 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등		
第17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61
第18條 (原産地 의 표시 등의調査)	제7 조(원산지 표시등의 조차	제5 조(원산지 표시등의 정기적	62
		인 수거 조사의 방법등	
제18 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	제7 조(공표명령의 기준 방법 등		64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한 처분 등			
第4章 農産物의 檢査 등			
第19條 (農産物의 檢査)	제8 조(농산물의 검사대상등	제255 조 농산물의 검사항목등	65
		제256 조 검사방법	66
		제257 조 검사신청절차)등	
第20條 (檢査員의 資格)	제9 조(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제258 조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68
		제259 조 합격자의 결정기준	69
		제260 조 검사원의 자격관리	
		제261 조 검사원의 교육	70
		제262 조 검사원의 증표	
第21條 (檢査證明書의 발급등		제263 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71
第22條 (異議申請 등		제264 조 이의신청	
第23條 (檢査判定의 失效)		제265 조 검사의 유효기간	72
第24條 (檢査判定의 取消)			73
第25條 (보고 및 點檢 등	제10 조(보고 및 점검대상 등		
第26條 (檢査機關의 지정등		제266 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등	74
		제267 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76
		제268 조 검사기관의 지도 감독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第27條 (農産物 의 檢定)		399 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400 조 농산물의 검정절차등	77
第28條 (부정행위금지등 제28 조의2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 에 관한 정보의 제공		401 조 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402 조 농산물의 검정행목 403 조 농산물의 검정방법	78 79
第5章 補則		404 조의2 (안전성 관련 정보의 수집) 405 조의2 (농산물 정보시스템의 운영	80
第29條 (農産物 의 名譽監視員)		406 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등	82
제29 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83
제29 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407 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84
제29 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 자격부여 등	제90 조의2 (자격시험의 실시 제90 조의3 (자격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85
	제90 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 위원회		86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제0 조의 (시험위원		88
	제0 조의 (자격시험의 공고 등	제0 조의(응시원서 및 수수료	
	제0 조의 (합격자의 공고 등	제0 조의(자격증 교부)등	89
제29 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90
제29 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91
제29 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92
第30條 (褒賞金)	제1 조(포상금의 지급		
第31條 (資金支援 및 優先購買)		제0 조 유통관련사업자 및 단체	93
제32 조(수수료)		제0 조 수수료	94
第33條 (聽聞)			96
第34條 (權限 의 위임 위탁등	제2 조(권한의 위임		97
	제2 조의(업무의 위탁		102
第6章 罰則			
제34 조의2 (벌칙)			103
第35條 (罰則)			
제36 조 (벌칙)			104
第37條 (兩罰規定)			106
제38 조 (과태료)	제3 조(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제0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age
부칙 <제5667 호, 1999.1.21>	부칙< 제6444 호1999.6.30>	부칙 제39 ,회1999.8.9>	109
		부칙 제54 ,회1999.12.31>	112
부칙 <제6191 호, 2000.1.21>	부칙< 제7165 호2001.3.27>	부칙 제5 ,호2001.3.28>	116
부칙 <제6378 호, 2001.1.26>			
부칙 <제6380 호, 2001.1.26>	부칙< 제7230 호2001.5.29>	부칙 제89 ,호2001.6.30>	117
	부칙< 제7242 호2001.6.22>	부칙 제95 ,호2001.7.31>	
부칙 <제6399 호, 2001.1.29>	부칙< 제7351 호2001.9.1>	부칙 제100 ,호2001.10.8>	119
	부칙< 제7674 호2002.7.13>	부칙 제21 ,호2002.7.22>	
부칙 <제6595 호, 2002.1.14>	부칙< 제8071 호2003.7.29>	부칙 제47 ,호2003.9.25>	124
부칙 <제6816 호, 2002.12.26>	부칙< 제8312 호2004.3.17>		125
	부칙< 제8594 호2004.12.3>		126
부칙 <제7675 호, 2005.8.4>	부칙< 제9279 호2006.1.16>	부칙 제15 ,호2006.1.25>	126
		부칙 제29 ,호2006.6.30>	
부칙 <제8103 호, 2006.12.28>	부칙< 제0103 호2007.6.26>	부칙 제61 ,호2007.6.29>	127
	별표 목차		129
		별표 목차	135
		별지 목차	153

농산물품질관리법 · 시행령 ·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章 總則</p>		
<p>第1條 (目的) 이 법은 農産物의 적정한 品質管理를 통하여 農産物의 商品性을 높이고 公정한 去來를 誘導 함으로써 農業人의 所得增大와 消費者保護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개정 2001.1.29 ></p>	<p>제 조 (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1.9.1, 2006.1.16 ></p>	<p>제 조 (목적) 이 규칙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1.10.8, 2006.1.25 ></p>
<p>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p> <p>1. "農産物"이라 함은 加工되지 아니한 상태의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생산자단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산림조합법」 제 조의 규정</p>	<p>제 조 (농산물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호에서 "기타 大統領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육하는 야생동물의 고기알 기타 부산물을 말한다 < 개정 2001.9.1, 2006.1.16 ></p>	<p>제 조 생산자단체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조 제 호에서 "기타 農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 개정 1999.12.31, 2001.10.8, 2006.1.25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업농촌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2. 「농업농촌기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3. 삭제 2001.10.8 >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 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3. "標準規格"이라 함은 農産物 의 包裝規格 과 等級規格 을 말한다</p> <p>4. "物流標準化"라 함은 農産物 의 運送·보관荷役·포장등 物流 의 各段階 에 서 사용되는 機器·容器·設備·情報 등을 規格化 하여 互換性 과 連繫性 을 원활히 하는 것을 말한다</p> <p>4의2. “우수농산물관리”라 함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4의3. “농산물이력추적관리”라 함은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해당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p>		<p>4.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이를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 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p> <p>5. "地理的表示" 라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水産物 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 로 한 加工品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의 名聲·品質 기타 特徵 이 本質的 으로 特定地域 의 地理的 特性 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農産物 및 그 加工品 이 그 特定地域 에서 生産 된 特産物 임을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p> <p>6. "原產地" 라 함은 農産物 이 생산 또는 採取 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p> <p>7. "遺傳子變形農産物" 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遺傳子 를 分離 또는 再組合 하여 의도한 特性 을 갖도록 한 農産物 을 말한다.</p> <p>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p>	<p>제 3 조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운영</p> <p>법 제 조제 항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이하 “ 심의회 라 한다 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 소속하에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이 하 “심의회” 라 한다 를 둔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5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하는 자로 한다.</p> <p>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 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 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 림부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 명한 자</p> <p>2. 다음 각 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p>	<p>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 인과 서기 1 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림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p> <p>[전문개정2007.6.26]</p> <p>제 조 삭제<2001.9.1></p> <p>제 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 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전문개정2001.9.1]</p> <p>제 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 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 정2001.9.1></p> <p>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개정2001.9.1></p> <p>제 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중앙회</p> <p>다.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p> <p>라.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국식품공업협회</p> <p>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농촌경제연구원</p> <p>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p> <p>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p> <p>3.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p> <p>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p>	<p>둘 수 있다< 개정2001.9.1></p> <p>제 조(분과위원회의 구성) 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10 인 이상 20 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2001.9.1></p> <p>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④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제 조(분과위원회의 회회) 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된다</p> <p>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천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p> <p>⑤ 제4 항제3 호 및 제4 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p> <p>⑥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6.12.28]</p> <p>제3조의2(심의회의 직무)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준규격화에 관한 사항 2.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4.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사항 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사항 6. 지리적 표시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8.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9. 농산물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사항 	<p>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은 심의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2001.9.1></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1.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p> <p>12.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p> <p>[본조신설 2006.12.28]</p>	<p>제0 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p> <p>①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 개정2001.9.1></p> <p>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 개정2001.9.1></p> <p>제1 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1.9.1></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章 農産物의規格·品質認證 등 <개정 2001.1.29></p> <p>第4條 (標準規格化) ①農林部長官은農産物의商品性의提高,流通能率의향상 및공정한去來의실현을위하여農産物의標準規格을정할수있다 <개정 2001.1.29></p> <p>②第1項의規定에의한標準規格에맞는農産物(이하"標準規格品"이라한다)을出荷하는者는포장의표면에"標準規格品"이라는표시를할수있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 및第2項의規定에의한標準規格의制定節次·기준 및표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農林部令으로정한다. <개정 2001.1.29></p>		<p>제 3 조 표준규격의 제정① 법4제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표준규격은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으로 구분한다. <개정 001.10.8></p> <p>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한국산업규격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관수송 등 유통과정의 편리성, 폐기물 처리문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항목에 대하여 그 규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래단위 2. 포장치수 3. 포장재료 및 포장재료의 시험방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4. 포장방법</p> <p>5. 포장설계</p> <p>6. 표시사항</p> <p>7. 기타 품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p> <p>③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규격은 품목 또는 품종별로 그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성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위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등급별 규격을 정한다</p> <p>제 3조 표준규격의 시험의뢰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3제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검사기관 등에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p> <p>제 3조 표준규격의 고시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3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야 한다 개정2001. 6.30, 2001.10.8></p> <p>예 조 표준규격품의 출하 및 표시방법</p> <p>① 농림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는 농산물을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출하·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2001.10.8></p> <p>② 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가 법4제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포장표면에 “ 표준규격품 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목 2. 산지 3. 품종 다만 품종을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품종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5條 (品質認證) ①農林部長官 은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제6 조제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의 品質向上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 2006.9.27></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p>	<p>제2 조(품질인증의 기준) ① 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농산물이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것일 것 2. 당해 농산물의 규격 또는 등급이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할 것 <p>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의 경우: 당해 농산물의 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산연도 곡류에 한한다 5. 등급 6. 무게 또는 갯수 다만 품목특성상 무게 또는 갯수를 표시하기 어려운 품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무게 또는 갯수의 표시를 단일하게 할 수 있다 7.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p>제 조 삭제 2006.1.25></p> <p>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제 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법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2001.3.28, 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인증품의 생산계획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은 農産物(이하 "品質認證品"이라 한다)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品質認證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기준 對象品目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성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또는 등급 이상일 것 나 가목외의 농산물의 경우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중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산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일 것</p> <p>3. 당해 농산물의 품질수준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생산기술과 생산시설 자재를 갖추고 있을 것 4. 당해 농산물의 생산출하과정에서의 자체 품질관리체계와 유통중 이상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타 농림부장관이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p>	<p>2. 품종확인서 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기준에 적합할 것</p> <p>②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2001.9.1></p> <p>제3 조(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 2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개정2001.9.1></p> <p>제4 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 2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2001.9.1></p> <p>② 농림부장관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품질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적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p>	<p>예 2 조(품질인증의 절차)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001.10.8></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장 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 개정2001.9.1></p> <p>③ 품질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2001.9.1></p>	<p>2001.10.8></p> <p>③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조직이 품질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각각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 개정2001.10.8></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2제 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2001.10.8></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품질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정2001.10.8></p> <p>제 조(품질인증품의 표시방법) 등</p> <p>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품</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6條（品質認證의 有效期間）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有效期間은 品質認證을 받은 날부터1年으로 한다. 다만 1年 이내에 그品目의 出荷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品目의 特性상 有效期間의 延長이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 2001.</p>		<p>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품질인증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 개정 2001.10.8></p> <p>②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1에 의하고 표시사항은 별표 2 제 1항 각호의 사항으로 하되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p>제 12조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6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질인증을 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0.8></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29></p> <p>第7條 (品質認證機關의 지정등) ①農林部長官은 農業人이 스스로 農産物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自體品質管理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生産者團體를 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p> <p>②品質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品質認證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認證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p> <p>④農林部長官은 品質認證機關이 다음</p>		<p>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0.8></p> <p>제 2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p> <p>① 법 제 2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3 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2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2. 품질인증의 업무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 4 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4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 ></p> <p>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2. 品質認證을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p>		<p>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2006.6.30 ></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조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4제 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 2001.10.8, 2006.6.30 ></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3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개 2001.10.8, 2006.6.30, 2007.6.29 ></p> <p>제 3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 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 30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도 감독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7제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품질인증기관이 원활한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다 < 개정 001.10.8 ></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품질인증 업무의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001.10.8 ></p> <p>제 31 조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① 법 7제 조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과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7제 조 4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2 (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①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에 관한 기준(이하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고 농업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생산·관리된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p> <p>③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산물(이하 “우수농산물인증품”이라 한다)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p> <p>⑤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p>	<p>제4 조(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①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일 것 2.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일 것 다만 품목의 특성상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일 것 <p>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농산물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대상품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5.8.4]</p>	<p>[본조신설2006.1.16]</p> <p>제4 조 의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대상품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p> <p>[본조신설2006.1.16]</p> <p>제4 조 의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 조의 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한 결과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p>	<p>제4 조 의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①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호의 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 이하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 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계획서</p> <p>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할 수 있다</p> <p>③ 우수농산물인증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2006.1.16]</p>	<p>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를 할 수 있다</p> <p>④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생산자단체 조직이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할 때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4세 호의 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⑥ 우수농산물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006.1.25]</p> <p>제 32조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7제 32의 4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 제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3 제 2외 와 같이 하되 인증기준에 의한 별도의 인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006.1.25]</p> <p>제 33조 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7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p> <p>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p> <p>1. 「양곡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미곡종합처리장</p>		<p>조 5의 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우수농산물인증을 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4제 3호의 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은 1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본조신설006.1.25]</p> <p>제 7조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절차 등)</p> <p>① 법 7제 33의 1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제 3호의 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p> <p>3. 그 밖에 농산물을 관리하는 시설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p> <p>②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산물(이하 이 조에서 “인증대상 농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p> <p>④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대상 농산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 개정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轉)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관리시설 및 인력 현황을 기재한 서류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 4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제 4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006.6.30></p> <p>③ 법 제 3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은 별표 3 외 과 같다. 개정006.6.30></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p> <p>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p> <p>3.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아니한 때</p> <p>⑤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5.8.4]</p> <p>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를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우수농산물인</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 일 이내에 3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4제 호의 서식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p> <p>< 개정 006.6.30, 2007.6.29 ></p> <p>[본조신설 006.1.25]</p> <p>제7조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7제 33의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의 와 같다</p> <p>[본조신설 006.1.25]</p> <p>제7조의4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7제 34의 1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제 호의 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외국의 기관을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우수농산물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 		<p>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6.30, 20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우수농산물 인증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 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06.6.30></p> <p>③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무를 하지 아니한 때</p> <p>4.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p> <p>④ 농림부장관은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5.8.4]</p>		<p>표 5와 같다 <개정 2006.6.30></p> <p>④ 제 41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6.30></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2 일 이내에 3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4제 41조의 서식의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07.6.29></p> <p>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4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7제 조 4의 제 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의 기관이 외국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농산물인증을 하기 위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6.6.30></p> <p>[본조신설006.1.25]</p> <p>제 81조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7제 조 4의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의 과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7제 조 4의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 ①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 중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농산물을 농림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 등록을 농림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농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 등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농림부</p>		<p>제7조의5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① 법 7제 조의 1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4제 호 외 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7.6.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7제 조의 2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p>② 법 7제 조의 1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1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③ 법 7제 조의 1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농산물에는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⑤ 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3 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⑥ 농림부장관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⑦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등록 절차, 등록사항 그 밖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농산물일 것 3. 법 제 53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는 농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농산물일 것 <p>④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세부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1 항 및 2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05.8.4]</p>		<p>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p> <p>⑦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생산자단체 조직이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p> <p>⑧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 및 2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3제 항 및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8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할 것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2.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것 <p>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4제 회 11 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⑪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006.1.25]</p> <p>제 20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7제 25의 7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은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p> <p>[본조신설006.1.25]</p> <p>제 21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사항) 법 7제 25의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재배지 위치 바 재배지 면적 사 생산계획량 2. 유통단계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가 수확 후 관리시설 명칭 또는 유통자 성명</p> <p>.나 수확 후 관리시설 소재지 또는 유 통자 주소</p> <p>.다 수확 후 관리시설 전화번호 또는 유통자 전화번호</p> <p>3. 판매단계</p> <p>가 판매처 명칭</p> <p>.나 판매처 소재지</p> <p>.다 판매처 전화번호</p> <p>[본조신설006.1.25]</p> <p>제11조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사항 변경신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농산물이력추적 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4제 호의 11 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006.1.25]</p> <p>第 23 條(農産物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등① 법 7제 25의 4제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농산물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p> <p>② 법 7제 25의 1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③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7의 2 과 같이 하되 별도의 등록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8條 (地理的 表示 의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地理的 特性 을 가진 優秀 農産物 및 그 加工品 의 品質向上 과 地域特化 産業으로의 육성 및 消費者保護 를 위</p>	<p>제5 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①) 제 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2001.9.1, 2002.7.13></p>	<p>[본조신설006.1.25] 제 7 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유효기간 만료 10 일 전까지 별지 제 4호 의 서식의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유효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연장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006.1.25] 제 5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제 5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5 호 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여 地理的表示 의 登錄制度 를 실시한다. <개정 2001.1.29></p> <p>②第1項 의 規定 에 의하여 地理的表示 의 登錄 을 받고자 하는 者 는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 에게 申請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 의 規定 에 의한 地理的表示 의 登錄 을 받은 者 는 農産物 및 그加工品(이하 "地理的特産品" 이라 한다) 에는 農林部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理的表示 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 中 「인삼산업법」 에 의한 인삼류 의 경우에는 農林部令 이 정하는 표시 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 "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地理的 표시 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01.1.29, 2005.8.4></p> <p>④第1項 의 規定 에 의한 地理的表示 의</p>	<p>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p> <p>2. 삭제<2002.7.13></p> <p>3.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p> <p>4. 당해 품목이 地理的 표시 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거나 이를 주원료로 하여 당해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일 것</p> <p>5. 기타 農림부장관이 地理的 표시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p> <p>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地理的 표시 의 登錄 기준은 該 項 의 規定 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i>Panax gin-seng</i> C.A. Meyer) 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p>	<p>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1.10.8></p> <p>1. 생산계획서 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p> <p>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p> <p>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4. 품질의 특성과 地理的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p> <p>5. 地理的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p> <p>6. 자체품질기준</p> <p>7. 품질관리계획서</p> <p>제 10 조(地理的 표시 의 登錄 심사) 동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該 條 條 의 規定 에 의하여 地理的 표시 의 登錄 申請 을 받은 때에는 申請 일부터 5 일 이내에 영 10 조 의 規定 에 의한 地理的 표시 登錄 審 의 회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登録의 기준對象品目·대상지역 및 절차와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개정 2002.1.14></p>	<p>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 신설2001.6.22, 개정006.1.16></p> <p>제6 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p> <p>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한다 < 개정2001.9.1, 2007.6.26></p> <p>②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 개정2001.6.22, 2006.1.16></p> <p>제7 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p> <p>①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 법인에 한한다</p>	<p>여야 한다 < 개정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의 명칭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¹ 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7.6.26></p> <p>②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단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지리적 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07.6.26></p> <p>제8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p> <p>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 2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회부하여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2001.9.1></p> <p>② 농림부장관은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p>	<p>제 35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p> <p>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 3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개정2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1.9.1)</p> <p>③ 농림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1.9.1></p> <p>④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30 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2001.9.1></p> <p>⑤ 농림부장관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1제 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1.10.8></p> <p>제 조 지리적표시의 등록)등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1제 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 6 호 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2001.10.8></p> <p>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1.10.8></p> <p>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개정2001.9.1></p> <p>⑥ 제 42조 내지 제 45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1.9.1></p>	<p>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p> <p>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p> <p>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p> <p>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p> <p>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 개정2001.10.8></p> <p>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p> <p>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p> <p>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p> <p>4. 취소사유</p> <p>제 46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p> <p>제 47조 제 48조 제 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9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 2005.8.4></p> <p>1. 標準規格品이 아닌農産物에第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標準規格品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2. 品質認證品이 아닌農産物에第5條第3項의規定에 의한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등록명칭을 표시하여야 하며 별표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같이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에 제7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3. 地理的 特産品 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 에 第8條第3項 의 規定 에 의한 地理的 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p> <p>②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1.1.29, 2005. 8.4 ></p> <p>1. 第4條第2項 의 규정에 의한 標準規格品 表示 를 한 標準規格品 에 標準規格品 이 아닌 農産物 을 混合 하여 販賣 하거나 販賣 할 目的 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하는 행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 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p> <p>2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에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2의3. 이력추적관리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p> <p>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 地理的 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p> <p>第10條 (標準規格品 등의 사후관리 ①) 農林部長官은 標準規格品, 품질인증품</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및 地理的 特産品의 品質水準의 유지와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다음 各號의 調査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p> <p>1. 표시품(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표시를 한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표시를 한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한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지리적표시를 한 지리적특산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격·품질 또는 인증등록의 기준에의 적합성 등의 조사</p> <p>2. 表示者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閱覽</p> <p>3. 表示品의 試料를 收去하여 調査를 하거나 專門試驗研究機關 등에의 試驗 依賴</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또는 收去를 하는 때에는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閱覽 또는 收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第11條 (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등 <개정 2005.8.4>) 農林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依賴를 한 결과 그 표시품이 표준규격, 품질인증의 기준 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 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또는 표시방법 등에 위반되거나 表示品의 生産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p>	<p>제9 조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1 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 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과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판매의 금지 또는 인증등록 취소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p> <p>第12條 (農産物의 安全性調査) ① 농림부 장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하여 다음各號의資材 등과 農産物에 대하여 殘留된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 및 抗生物質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有害物質이 農林部令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 (貯藏段階 및 出荷되어 去來 되기前段階의 農産物의 경우에는 食品衛生法 등의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 21, 2001.1.29, 2002.1.14></p>	<p>제20 조(안전성조사계획의 수립) 농림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01.9.1, 2002.7.1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성조사의 기본방향 2.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대상품목 및 대상유해물질 등에 관한 사항 <p>제21 조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① 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은 농산물의 주산단지 시설재배단지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토양수질오염이</p>	<p>제2 조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p> <p>제2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생산자재 등과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은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p> <p>2. 生産·貯藏(生産者가 貯藏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段階나 出荷되어去來되기 前段階의 農産物</p> <p>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令을 정하는 때에는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調査의 對象地域·對象品目·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우려되는 지역 저장창고 및 도매시장 등으로 한다< 개정2002.7.13></p> <p>② 생산 저장 및 출하단계별 특성에 따라 안전성조사의 대상품목 및 조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2001.9.1></p> <p>1. 생산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생산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p> <p>2. 저장단계조사는 저장과정을 거치는 농산물중 생산자가 저장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그 저장장소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p> <p>3. 출하단계조사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집하장 위판장 공판장 등에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에 있는 농산물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p> <p>③ 안전성조사의 구체적인 대상지역 및 대상품목과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3條 (試料收去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 의規定 에 의한 安全性調査 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公務員 으로 하여금 農産物 의 生産場所 또는 貯藏場所 에 있는 農産物 이나 出荷 되어 去來 되기 前段階 의 農産物 에 대하여 試料 를 收去 하여 調査 를 하게 하거나 당해 農産物 을 生産·貯藏 또는 運搬 하는者 의 關係帳簿 또는 書類 를 閱覽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2.1.14></p> <p>②第1項 의 規定 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 을 하는 때에는 農産物 이나 資材 또는 土地 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 은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 의 規定 에 의하여 收去·調査 또는 閱覽 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p>	<p>농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001.9.1></p>	<p>제2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법 10조 제1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7제 호서식에 의한다 <개정002.7.22></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第14條 (安全性調査 결과에 대한措置)</p> <p>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의 生産을 위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는 土壤·用水·資材 등과 生産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을 生産하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29, 2002.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殘留許容基準 등의 초과사실 2. 당해 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이를 이용 또는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뜻 	<p>제2 조(잔류허용기준 초과사실의 고지 및 처리방법)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사실을 생산자 등에게 고지하는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경우에는 이용사용중지 또는 개량방법과 그 기한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1 에 해당하는 처리방법을 정하여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당해 農産物 의 出荷延期·用途轉換·폐기등 처리방법</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者는 그 告知된 내용에 따라 당해土壤·用水·資材 등을 개량하거나 그 이용 또는 사용을 중지하고 당해 農産物 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p> <p>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貯藏段階 또는 出荷되어 去來되기 全段階의 農産物에 대하여 安全性調査를 한 결과食品衛生法 등 關係法令에 의한 殘留許容基準 등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農産物의 貯藏 또는 運搬하는者 등에게 그 초과사실과 함께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 처리방법을 書面으로 告知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4></p> <p>④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第3項</p>	<p>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 등의 規定에 의한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까지 출하연차 생산단계 및 저장단계에 있는 農産物에 한한다</p> <p>2. 당해 農産物의 유해물질이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식용으로 출하할 수는 없으나 사료공업용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p> <p>3. 제 호 또는 ㉞ 호의 規定에 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폐기</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받은 者가 그 告知된 內容에 따라 당해 農産物의 出荷延期·用途轉換·廢棄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를 通報하고 關係法令에 따라 필요한措置를 하여 줄 것을 要請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1.29, 2002.1.14></p> <p style="text-align: center;">第3章 原産地 등의 표시</p> <p>第15條 (原産地의 표시) ①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流通秩序確立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에 대하여 그 原産地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産地를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는 당해 農産</p>	<p>제3 조(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① 법 제5 조제 1항의 規定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農産物 및 이를 원료로 한 加工品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이 수입농산물 및 수입 加工품 이하 “수입농산물 등”이라 한다면 「대외무역법 제</p>	<p>제28 조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방법</p> <p>① 영 제24 조제 1항의 規定에 의하여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p> <p>1. 포장하여 판매하는 農産物은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農産物은 당해 農産物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부착 또는 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物 및 그 加工品 의 原料 에 대하여 原産地 를 표시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29></p> <p>③第1項 의 規定 에 의한 原産地 의 表示 對象品目·표시방법 原産地 관정기준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으 로 정한다.</p>	<p>2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 관이 공고한 품목으로 한다 < 개정 2001. 9.1, 2006.1.16></p> <p>②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제 4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산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신설 2006.1.16></p> <p>제4 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1.5.29, 2001.9.1, 2002.7.13, 2006.1.16, 2007.6.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 국 산 또는 그 농산물 등을 생산한 특별시 광역시 도 이하 “ 시도 라 한다 명이나 시군자치부 이하 “ 시 군 구 라 한다 명을 표시한다 2. 수입농산물등의 경우에는 「 대외무역법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 산지를 표시 	<p>매용기 등에 표시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표시는 한글로 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문 또는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 개정 2002.7.22, 2006.1.25>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2. 법 제 24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3.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품 4. 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품 5. 법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특산물 6. 친환경농업육성법 14 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7.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14 조의 규정에 의한 특산물과 전통식품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국내가공품 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p> <p>4.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은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표시한다</p> <p>② 제 4항제 호 제 호 및 제 호에 따른 국산농산물등 국내가공품 및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01.5.29, 2001.9.1, 2007.6.26></p> <p>③ 삭제<2006.1.16></p> <p>제5 조 (원산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 15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2002.7.13, 2006.1.16></p> <p>1. 사 도명이나 서 군구명을 표시하는 농산물: 당해 농산물이 생산된</p>	<p>③ 국산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 색도 또는 표시판꼴말의 크기 등에 관하여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01. 10.8></p> <p>제2 조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 영 제2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가공품의 원산지표시는 다음 각 호의 가공품(원료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당류 및 식염은 배합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 개정2001. 6.30, 2001.10.8, 2006.1.25, 2007,6,29></p> <p>1. 사용된 당해 원료중 배합비율50 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배합비율50 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가지의 원료</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 도 또는 시군구</p> <p>2. 사 도명이나 서 군구명을 표시하 는 야생 동식물 당해 동식물이 사 육 또는 채취된 서 도 또는 시군구</p> <p>② 법 제5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 입농산물등의 원산지 판정은 「 대외무 역법 시행령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수입 농산물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당 해 가공품의 원산지는 그 가공품에 제 공된 수입농산물 또는 수입가공품의 원산지로 본다 < 개정 2001.9.1, 2002.7.13, 2006.1.16></p> <p>③ 농림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정 2001.9.1></p>	<p>를 대상으로 할 ,것 다만 가공품의 원료로 「 식품위생법 1제 조에 따 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 가공처리법 6제 조에 따른 복합원재 료를 사용한 경우의 표시대상은 농 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2. 특정원료농산물의 명칭을 제품명으 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정원료농산 물이 제 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이 아닌 때에는 그 특정원료농산물 을 함께 대상으로 할 것</p> <p>②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외의 원료에 대하여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p> <p>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 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 개정2001.6.30, 2001.10.8, 2002.7.22, 2006.1.25, 2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산원료는“ 국산 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시·도·명·이나·시·군·구·명·으로 표시 2. 수입원료는 대외무역법령에 의한 원산지국가명을 표시 다만 1제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 할 경우“ 수입산 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동일원료를 원산지가 다른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 다만 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동일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국까지의 원산지 및 혼합비율을 표시할 수 있다 4. 국내가공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 으로 표시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할 수 있다</p> <p>④ 동일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별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5 퍼센트 이하인 때에는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비율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6.1.25 ></p> <p>⑤ 제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공품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인하여 원료원산지의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 개정 2001.6.30, 2001.10.8, 2006.1.25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원료의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5 개국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3년 동안에 5 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2. 정부가 가공품원료로 공급하는 수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입쌀을 사용하는 경우</p> <p>3.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⑥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 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 10.8></p> <p>제21조 제21조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p> <p>제21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표시</p> <p>2. 원산지 국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6條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 < 개정 2001.1.29>) ①農林部長官 은消費者에게 올바른 購買情報 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大統領令 이 정한 경우에는 遺傳子變形農産物 을 販賣 하는 者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 임을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1.1.29></p> <p>②第1項 의 規定 에 의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 임을 표시하도록 한 農産物 을 販賣 하는 者는 당해 農産物 에 대하여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제6 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 품목) 법 제6 조제 항에 따른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품목은 「식품위생법 제5 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p> <p>[전문개정2007.6.26]</p> <p>제7 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① 법 제6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은 다음</p>	<p>높은 순으로3 개국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p> <p>②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 색도 등 표시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개정 2001.1.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遺傳子變形農産物의 表示對象品目·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개정 2001.1.29></p>	<p>각호와 같다< 개정2007.6.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전자변형농산물: “ 유전자변형 농산물 임산물 또는 축산물 로 표시 2.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 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으로 표시 3.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 “ 유전자변형농산물 임산물 또는 축산물 포함 가능성 있음 으로 표시 <p>② 법 제6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은 당해 농산물의 포장 용기의 표면 또는 판매장소 등에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표시한다< 개정2001.9.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종 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2.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3. 표시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17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第15條 第1項 및 第16條第1項 의規定 에 의하 여 原產地 의 표시를 하도록 한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 을 販賣 하거나 加工 하 는 者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 를 하도록 한 農産物 을 販賣 하는者 는 다음 各號 의 行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개정 2001.1.29></p> <p>1.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混同 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p>	<p>③ 제 항 및 ㉠ 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정 2001.9.1></p> <p>④ 농림부장관은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2001.9.1></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原產地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를 混同 하게 할 目的 으로 그 표시를 損傷·변경하는 행위</p> <p>3. 原產地 를 偽裝 하여 販賣 하거나 原產地 의 표시를 한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 에 다른 農産物 또는 加工品 을 混 合하여 販賣 하거나 販賣 할 目的 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하는 행위</p> <p>4.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표시를 한 農産物 에 다른 農産物 을 混 合하여 販賣 하거나 販賣 할 目的 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하는 행위</p> <p>第18條 (原產地 의 표시 등의 調査)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p>	<p>제7 조의 (원산지 표시등의 조사)① 법 제8 조제 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정기적인 수거 조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회 실시한다</p>	<p>제2條 조의 (원산지 표시등의 정기적인 수거 조사의 방법)등 영 2條 조의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001.10.8, 2003.9.25></p> <p>1. 원산지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대상업소 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14></p> <p>② 농림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전자변형표시대상 농산물을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의 유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시기 등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수거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신설 2002.1.14></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原産地의 表示對象農産物이나 그 加工品을 販賣하거나 加工하는 者 또는 遺傳子 變形農産物을 販賣하는 者는 正當한</p>	<p>② 법 제8 조 條 項 本문의 規定에 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대상농산물의 정기적인 수거 조사는 농림부장관이 업종 규모 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회 실시한다</p> <p>③ 삭제<2006.1.16></p> <p>④ 제 8 항 또는 條 項의 規定에 의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2002.7.13]</p>	<p>·거 조사의 방법 시기 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2. 유전자변형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수거 조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대상업소 수거 조사의 방법 시기 기간 및 대상품목 등을 포함하는 정기수거 조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실시</p> <p>[본조신설001.6.30]</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유없이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정 2001.1.29, 2002.1.14></p> <p>④ 제1 항 또는 제2 항의 規定에 의하여 原產地의 表示對象農産物 이나 그加工品 또는 遺傳子變形農産物 의 表示對象農産物 의 收去 또는 調査 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개정 2001.1.29, 2002.1.14, 2006.12.28></p> <p>제18조의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①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처분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p>제7 조의(공표명령의 기준 방법 등) ① 법 제8 조의 條 項의 規定에 依한 공표명령의 대상은 법 제8 조의 條 項의 規定에 依하여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표시위반물량 100 톤 이상 2.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자에게 해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③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5.8.4]</p> <p>第4章 農産物의 檢査 등</p> <p>第19條 (農産物의 檢査) ①農林部長官</p>	<p>: 10 억원 이상 가공품의 경우 20 억원 이상</p> <p>3. 적발일 이전 최근 1 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2 회 이상</p> <p>② 법 제8 조의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표문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1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 개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체명 업주명 및 주소 2. 위반농산물명 3. 위반내용 4. 처분내용 <p>[본조신설2006.1.16]</p> <p>제8 조 (농산물의 검사대상등) ① 법</p>	<p>제 25 조 (농산물의 검사항목등) 법 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은 공정한 流通秩序確立 과 消費者保護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政府가 收買 하거나 輸出 또는 輸入하는 農産物 등 大統領令 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檢査 를 실시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項目·檢査基準·방법 및 檢査申請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으로 정한다.</p>	<p>제9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6.1.1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농업관련 법인 등 이하 “ 생산자단체 ”라 한때 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농산물 2. 정부가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4. 기타 농림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p>② 제 항제 호 내지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은 별표2 와 같다</p>	<p>19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항목은 포장단위당 무게 포장재 포장방법 및 품위 등으로 하며 검사대상 품목별 검사기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216 조 (검사방법) 법 19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사방법은 전수 또는 표본추출의 방법에 의하여 시료의 추출 계측 감정 등급판정 등 검사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누에씨 및 누에고치의 경우에는 ·시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2제 ·조28 조 및 30 조 내지 3제 조에 서 같다 이 정하여 고시한다</p> <p>217 조 (검사신청절차) 등① 법 19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2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 이하 지정검사기관의 ”장 이라 한다 에게 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를 받고자 하는 날부터 일전까지 별지 8제 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한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영 28제 조제 항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하는 경우 2. 법 20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이하 “ 검사원 이라 한다 의 참여하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검사를 받을 농산물의 포장 및 중량이 2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0條 (檢査員의 資格) ①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農産物을 檢査할 수 있는 資格을 갖춘者(이하"檢査員"이라 한다)로 하여금 檢査를 실</p>	<p>제9 조 (검사원의 자격요건 등 ①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 (이하 "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곡류 특작서류 과실 채소류 종자류 참사류 등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p>	<p>에 맞도록 하여 포장표면에 별지9제 호 서식의 꼬리표를 붙이거나 꼬리표의 내용을 포장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표면에 붙이는 꼬리표의 표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한다</p> <p>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꼬리표의 표시사항의 변경이 검사품의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p> <p>제28 조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 및 방법 ① 영 2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은 농</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시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員의 資格要件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令으로 정한다</p>	<p>② 檢査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國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누에씨 및 누에고치 檢査員의 경우에는 시도 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개정2002.7.13></p> <p>1. 農産物檢査 관련 업무에6 개월 이상 종사한 공무원</p> <p>2. 生産者단체등에서 農産物檢査 관련 업무에1 년 이상 종사한 자</p> <p>③ 國립農産物品質管理院長은 檢査員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檢査員의 資格을 取消하거나1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資格의 停止를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의 資格을 取消당한 자는 取消일부터1 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2條 項의 規定에 依한 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2001.5.29></p> <p>1. 現저한 부적格檢査로 檢査의 公事</p>	<p>産物의 檢査에 關한 法規檢査기준 檢査方法 등에 對하여 新 위형과 선택형으로 出제하여 실시하고 실기시험은 資格구분별로 해당 品目의 등급 및 品 위항목 등에 對하여 실시한다</p> <p>③ 2條 項의 規定에 依한 필기시험에 합격한 者에 對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新設 2001.6.30></p> <p>④ 資格전형의 응시절차 등에 關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國립農産物品質管理院長이 定하여 고시한다</p> <p>2條 項 2條 項 合格者의 결정기준 2條 項의 規定에 依한 資格전형의 合格者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各400 점 滿점으로 하여 各400 점 以上인 者로 한다</p> <p>3條 項 3條 項 檢査員의 資格管理① 國립農産物品質管理院長은 2條 項의 規定에 依하여 資格전형에 합격한 者에 對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력을 크게 저해한 때</p> <p>2. 검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p> <p>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 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의 구분방법 합격자의 결정 및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여는 검사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별지 14호 서식의 농산물검사원 자격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p> <p>③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소속검사원이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 신분변동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 43조 검사원의 교육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가 부담한다</p> <p>제 44조 검사원의 증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1條 (檢査證明書의 발급등) 檢査員이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한 때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農産物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檢査 날짜, 等級 등의 檢査結果를 표시하거나 檢査를 받은 者에게 檢査證明書を 교부하여야 한다</p> <p>第22條 (異議申請 등) ①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檢査結果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檢査現場에서 檢査를 실시한 檢査員에게 再檢査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檢査員은 즉시 再檢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의 결과</p>		<p>여 자격전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 11 호서식의 농산물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제 30 조 (검사표시인 및 검사증명서의 발급) 법 제 22 조의 규정에 의하여 檢査를 한 농산물의 포장 또는 꼬리표에 표시하는 검사표시인은 별표 1에 의하며 檢査를 받은 자에게 교부하는 檢査증명서는 별지 제 12 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별도의 檢査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國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 31 조 (이의신청) ① 법 제 22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의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3 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재검사를 실시한 檢査員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다시 檢査를 실시하여</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者는再檢査日 부터 7日 이내에 檢査員이 소속된 檢査機關의 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 받은 機關의 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부터 5日 이내에 다시 檢査하여 그 결과를 異議申請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第23條 (檢査判定의 失效)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의 효력이 상실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林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경과된 때 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가 멸실 또는 不明確하게 된 때 <p>第24條 (檢査判定의 取消) 農林部長官은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農産物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檢査判定을 取消할 수 있다.</p>		<p>그 결과를별지 1제 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검사의 결과가 재검사를 하기 전의 검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검사표시인 등을 정정하여야 한다</p> <p>제 23 조 검사의 유효기간 법 2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과 같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p> <p>2.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의 표시 또는 檢査證明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사실이 확인된 때</p> <p>3. 檢査를 받은 農産物의 포장이나 內容物을 바꾼 사실이 확인된 때</p> <p>第25條 (보고 및 點檢 등) ①農林部長官은 政府가 收買하거나 輸入한 農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産物에 대하여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나 販賣業者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倉庫·加工工場·店鋪 등의 場所에 보관중인 農産物 또는 그 包裝材의 點檢과 關係帳簿 또는 書類의 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때에는 保管倉庫 또는 加工工場을 운영하는 者 또는 販賣</p>	<p>제20 조 (보고 및 점검대상 등) 법 제 25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점검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2.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거나 수입한 농산물 3.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는 者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제1 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또는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點檢 또는 調査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p> <p>第26條 (檢査機關의 지정등) ① 農林部長官은 農産物의 生産者團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하 "政府投資機關"이라 한다) 또는 農業關聯法人 등을</p>		<p>제36 조 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8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5 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檢査機關으로 지정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4></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檢査에 필요한 施設과 人力을 갖추어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檢査業務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p> <p>④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이 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p> <p>1.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p> <p>2. 檢査를 허위로 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경우</p>		<p>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006.6.3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3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② 제 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2제 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006.6.30></p> <p>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 및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p> <p>제26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p> <p>제27조 검사기관의 자도 감독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 26 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도 감독할 수 있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검사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또는 서류 등을 확인할</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7條 (農産物의 檢定 < 개정 2001.1.29>) ①農産物의 生産者, 消費者 또는 流通業者 등은 農産物의 去來 및 輸出·輸入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産物의 品位·成分·殘留農藥 등에 대한 檢定(이하 "檢定"이라 한다)을 하여 줄 것을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p> <p>②農林部長官은 檢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檢定을 실시하고 申請人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p>		<p>수 있다</p> <p>제30 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등의 처분기준) ① 법 26조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과 같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26조 4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0 조(농산물의 검정절차등 개정 2001.10.8>) ① 법 26조 4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별지 1제 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 정 2001.3.28, 2001.10.8></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시료를 접수한 날부터 일 이내에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 이내에 분석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청인</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檢定項目·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p>		<p>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검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제4조(농산물 검정증명서의 발급) <개정 2001.10.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1제 호 서식의 검정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8> 제4조(농산물의 검정항목) <개정 2001.10.8>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검정항목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28條 (부정 행위금지등) 누구든지 第19條第1項 또는 第27條第1項 의規定 에 의한 檢査 또는 檢定 과 관련하여 다음 各號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 을 받는 행위 2. 第19條第1項 의 規定 에 의하여 檢査 를 받아야 하는 農産物 에 대하여 檢査 를 받지 아니하는 행위 3. 檢査結果 의 표시, 檢査證明書 또는 檢定證明書 를 偽造 하거나 變造 하는 행위 4. 檢査 를 받은 農産物 의 포장이나 內容物 을 바꾸는 행위 		<p>제48조 농산물의 검정방법 (개정01.10.8)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품위 성분 및 잔류농약 등의 검정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01.10.8)</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5. 檢定結果에 대하여 허위 또는誇大 廣告를 하는 행위</p> <p>제28조의2(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농산물품질인증, 원산지표시 등 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에 관련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이라 한</p>		<p>제28조의2(안전성 관련 정보의 심의)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보는 법 제3제2조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약 및 중금속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관한 정보 등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등에게 선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항 3.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p>[본조신설007.6.29]</p> <p>제28조의3(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법 제28조의2제3항에 따른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의 수집</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다) 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p> <p>④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6.12.28]</p>		<p>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이하 농산물정보시스템 이라 한다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 이하 “ 운영기관 이라 한다 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제 항에 따라 정보를 생성하는 기관이 운영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절차 등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 업무 2. 농산물 안전 및 품질 관련 정보의 수집 분류 배포 등 정보관리업무 3. 데이터표준 연계표준 및 정보시스템 개발표준 등 표준관리 업무 4. 고객관리 업무 5. 농산물정보시스템의 홍보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5章 補則</p> <p>第29條 (農産物의 名譽監視員< 개정2001.1.29>) ①農林部長은 農産物의 公正한 流通秩序確立을 위하여 消費者團體 또는 生産者團體의 會員·職員 등을 農産物 名譽監視員으로 위촉하여 農産物의 流通秩序에 대한 監視·指導·啓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9></p> <p>②農林部長官은 農産物名譽監視員에게 監視活動에 필요한 經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名譽監視員의 資格·위촉방법任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p>		<p>6. 사용자 교육</p> <p>7. 그 밖에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p> <p>[본조신설007.6.29]</p> <p>제41조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개정001.10.8>)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법 제2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산물명예감시원 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 을 위촉한다< 개정 2001.3.28, 2001.6.30, 2001.10.8, 2002.7.2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의 회원이나 직원중에서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 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있고 명예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data-bbox="152 240 443 277"><개정 2001.1.29></p> <p data-bbox="120 1182 763 1406">제29조의2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운영한다</p> <p data-bbox="120 1433 488 1469">[본조신설 2002.12.26]</p>		<p data-bbox="1518 240 2107 341">감시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p> <p data-bbox="1451 368 2107 469">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8, 2002.7.22></p> <ol data-bbox="1451 496 2107 906"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전성조사 및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에 관한 지도 홍보 및 위반사항의 감시 신고 2. 기타 농산물의 유통질서확립과 관련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부여하는 임무 <p data-bbox="1451 933 2107 1157">③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10.8, 2002.7.22></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등급판정 2.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 기술 등에 대한 자문 3.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 <p>[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3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업무) 법 제29조의3 제 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생산 및 수확후의 품질관리 기술 지도 2. 농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용 관리 3.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브랜드 개발 등 상품성향상 지도 4. 포장농산물의 표시사항 준수에 관한 지도 5. 농산물의 규격출하 지도 <p>[본조신설 03.9.25]</p>
<p>제29조의4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 자격부여 등) ① 농산물품질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p>	<p>제30조의 (자격시험의 실시) 법 제29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이하 “자격시험”이라 함은 매년 회 실시하되 농림부장관이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 방법 합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02.12.26]</p>	<p>4 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 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p> <p>[본조신설2003.7.29]</p> <p>제0 조 의 (자격시험의 방법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① 자격시험은 체 차 선택형 필기시험과 체 차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p> <p>② 체 차 선택형 필기시험은 다음 각 호 의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각 과목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 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자중 평균점수가 60 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 2. 원예학개론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을 포함한다 3. 농산물유통론 <p>③ 체 차 실기시험은 체 차 선택형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농산물</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를 시험과목으로 하여 실시하고 100 점을 만점으로 하여 60 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2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췌006.1.16></p> <p>④ 농림부장관은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 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p> <p>[본조신설2003.7.29]</p> <p>제0 조의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①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따 를 둔다</p> <p>1. 응시자격 및 자격시험의 방법에 관한 사항</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p> <p>3.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위원회는 위원장1 인을 포함한9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6.1.16></p> <p>③ 농림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위원회의 구성일 전일까지로 한다</p> <p>④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⑤ 제 42 호 내지 제 44 호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2003.7.29]</p> <p>제40 조의 (시험위원) ① 농림부장관은 농산물의 유통 및 품질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할 자 이하 “ 시험위원 ” 이라 한다 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제 4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시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2003.7.29]</p> <p>제40 조의 (자격시험의 공고 등) ① 농림부장관은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기준 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60 일전까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 조제 4 호의 규정에 따라 보급지역</p>	<p>제40 조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영 30 조의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 지 제 호서식에 의한다</p> <p>② 영 30 조의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1 차 필기시험 3 만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전국으로 등록한2 이상의 일반일간신 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06.1.16></p> <p>②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 림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농림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림 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1.16></p> <p>[본조신설2003.7.29]</p>	<p>신 2. 2 차 실기시험5 5만 천원</p> <p>③ 영 30 조의 3제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 지 아니한다 다만 1제 호의 경우는 과 오납한 금액을 2제 호 및 3제 호의 경우 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하고 4제 호의 경우에는 영 30 조의 의 규 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시험위원회 에서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의하여 반 환한다< 신설2006.1.2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원서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 한 경우 3.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4. 시험시행 전일까지 원서접수를 취소 하는 경우 <p>[본조신설2003.9.25]</p>
	제0 조의 (합격자의 공고 등 ① 농림	제 조의 (자격증 교부 등 개정200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29조의5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 사항) ①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통의 효율화를 촉진하여</p>	<p>부장관은 제40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4차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를 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명단을 자격시험의 시행후4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농림부장관은 제41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2003.7.29]</p>	<p>의 6.1.25>) ① 영 340조의 2제 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14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행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20호 서식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농산물품질관리사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24호 서식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2006.1.25></p> <p>[본조신설003.9.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p>②농산물품질관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p> <p>[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6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 취소)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 2. 제34조의2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자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 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자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p> <p>[본조신설 2002.12.26]</p> <p>제29조의7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부장관은 농산물품질관리사를 고용하는 등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산지소비지 유통시설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본조신설 2002.12.26]</p> <p>第30條 (褒賞金) 農林部長官 은 제5 조 내지 제1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主務官廳 또는 搜查機關 에 申告 또는 告發 한 者 등에 대하여 大統領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褒賞金 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6.12.28></p>	<p>제1 조 (포상금의 지급 ① 법 30 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법 30 조부터 제7 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 200 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한다 < 개정2006.1.16, 2007.6.26></p> <p>②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의 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上場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 2005.8.4></p> <p>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農産物 또는 그加工品을購買하고자 하는 때에는 標準規格品·品質認證品 및 地理的の特産品을 우선적으로購買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 2005.8.4></p> <p>제3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가 수매하거나 수출 또는 수입하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p>		<p>한 법률 5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p> <p>2.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 동법 2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도매인 동법 2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동법 2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동법 2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유통인 및 이들로 구성된 단체</p> <p>3. 농산물을 계약재배 양식 또는 수집하여 이를 포장 판매하는 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p> <p>[전문개정 2001.6.30]</p> <p>제33조(수수료) ① 법 3제 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지리적표시의 등록 농산물의 검사 및 농산물검정의 신청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5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7 조의2 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을 신청하는 자 3. 제7 조의3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4. 제7 조의4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7 조의5 제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6. 제8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7. 제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8. 제27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p>[전문개정 2005.8.4]</p>		<p>같다 <개정>001.10.8, 2006.1.25></p> <p>② 법 3 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농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001.10.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정을 신청하는 농산물 2. 영 2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농산물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하는 농산물 3. 기타 농림부장관이 수수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 다만 품질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이 품질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농산물을 제외한다 <p>③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우수농산물인증의 신청 및 검사에 관한 수수료를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그 소요경</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33條 (聽聞) 農林部長官 은 다음各號의 1 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 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2.26, 2005.8.4></p> <p>1. 第7條第4項 의 規定 에 의한品質認證機關 의 指定取消</p> <p>1 의2. 제7 조의3 제4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취소</p> <p>1 의3. 제7 조의4 제B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취소</p> <p>2. 第11條 의 規定 에 의한販賣 의 금지, 認證·登錄 의 取消 등</p>		<p>비와 당해 농산물의 가격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8, 2006.1.25></p> <p>④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방법은 당해 품질인증기관의, 장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장 또는 지정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判定의 取消</p> <p>4.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p> <p>5. 제29 조의6 제 항의 規定에 의한 자격취소</p> <p>第34條 (權限의 위임위탁등 < 개정 2002.1.14 >) ① 이 법의 規定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山林廳長, 시도지사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 2002.1.14, 2005.8.4 ></p> <p>② 農林部長官은 이 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生産者團體, 政府投資機關, 政府出捐機關 또는 農林關聯法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 개정 2001.1.29, 2005.8.4 ></p>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 받은業</p>	<p>제2 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權限중 임산물 및 그 가공품에 관한 權限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 조 제 항의 規定에 의한 표준규격의 제 개정 또는 폐지 2. 법 제 조 제 항의 規定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3. 법 제0 조 및 법 제1 조의 規定에 의한 표준규격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표시변경 등의 처분 4. 법 제9 조의 規定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의 業務에 종사하는 生産자단체의 임직원, 제7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임직원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業務에 종사하는 生産者團體 등의 任·職員은 「형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개정 2005. 8.4></p>	<p>5. 법 제1 조제 항의 規定에 의한 품질향상 및 표준규격화 촉진 등을 위한 자금지원</p> <p>6. 법 제8 조제 항의 規定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법 제10 조제 항의 위반행위에 한한과</p> <p>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의 規定에 의하여 법 제9 조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p> <p>③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2.7.13, 2003.7.29, 2006.1.16></p> <p>1. 법 제 조제 항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 및 축산물의 표준규격의 제 개정 또는 폐지</p> <p>2. 법 제 조의 規定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3.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 의.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의 인증</p> <p>3 의.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 의.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3 의.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등록</p> <p>4.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의 등록</p> <p>5. 법 제 조 및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 변경 등의 처분 다만 임산물의 표준</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규격품 및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제외한다</p> <p>6. 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임산물 및 이의 생산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시료수거 등을 포함한다 및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의 결과에 대한 조치</p> <p>7. 법 제8 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조사와 유전자변형농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조사</p> <p>7 의. 법 제8 조의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동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명령</p> <p>8. 법 제9 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검사 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하는 농산물과 누에씨 누에고치 검사를 제외한다</p> <p>9. 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점검 등</p> <p>10. 법 제6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p> <p>11. 법 제7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등의 검정</p> <p>12. 법 제9 조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명예감시원의 위촉 및 경비의 지급</p> <p>13. 법 제9 조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계획수립 시행</p> <p>14. 법 제9 조제 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p> <p>15. 제10 조제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의 교부</p> <p>16. 법 제8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④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2006.1.16></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1.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의 고시</p> <p>2. 법 제 조의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대한 교육의 실시</p> <p>⑤ 삭제<2001.9.1></p> <p>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2001.3.27, 2001.9.1, 2002.7.13, 2006.1.16></p> <p>제2 조의 (업무의 위탁)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 제 항에 따라 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농산물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정보 관련 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7.6.26></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第6章 罰則</p> <p>제34조의2 (벌칙)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본조신설 2002.12.26]</p> <p>第35條 (罰則) 다음各號의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懲役 또는 3千萬 원이하의罰金에處한다 <개정 2001.1.29, 2005.8.4></p> <p>1. 第9條第1項 各號의規定에 위반하</p>	<p>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 조제 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9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006.1.16, 2007.6.26> [본조신설2003.7.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여 標準規格品表示· 품질인증표시 우수 농산물인증표시 이력추적관리표시 또는 地理的表示 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者</p> <p>2. 第9條第2項 各號 의 規定 에 위반하여 標準規格品· 품질인증품 우수농산물 인증품 이력추적관리품 또는 地理的の特産品 에 標準規格品 등이 아닌 農産物 등을 混合 하여 販賣 하거나 販賣 할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 한者</p> <p>3. 삭제 <2002.12.26></p> <p>4. 第28條第1號 의 規定 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檢査 또는 檢定 을 받은者</p> <p>5. 第28條第3號 의 規定 에 위반하여 檢査結果 의 표시등을 偽造 하거나 變造 한者</p> <p>제3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7조의5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2. 제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변경 등 시정명령 표시의 정지 또는 판매의 금지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14 조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지된 처리방법에 따라 토양 등의 개량 등이나 당해 농산물의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8 조2 제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의 이행 변경 삭제 등 시정명령이나 위반농산물 또는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5. 제18 조2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p> <p>6. 제28 조제2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p> <p>7. 제28 조제4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농산물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8. 제29 조의5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p> <p>[전문개정 2005.8.4]</p> <p>第37條 (兩罰規定) 法人 의 代表者, 法人 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 에 관하여 제34 조의2· 제35 조 또는 제36 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 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 의 罰金刑 을 科 한다. <개정 2002.12.26></p> <p>제38 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개정 2005.8.4></p> <p>1. 제7 조의5 제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가. 제7 조의5 제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p>	<p>제3 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개정 2002.7.13>) ① 법 제3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 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개정 2001.9.1, 2002.7.13></p>	<p>제47 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3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003.9.25, 2006.1.25></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하지 아니한 자</p> <p>나. 제7조의5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다. 제7조의5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0조의제2항 제3조제2항 제8조 제3항 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p> <p>3. 제15조제2항 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 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p> <p>4. 제15조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p> <p>5. 제28조제5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p>	<p>②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하 “부과권자라 함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개정 2001.9.1, 2002.7.13, 2004.3.17 ></p> <p>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개정 2001.9.1, 2002.7.13 ></p> <p>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01.9.1 ></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 개정 2002.1.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 항제1 호중 제3 조제2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원산지표시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자로서 제1 항제1 호중 제18 조제3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 항제2 호중 제5 조제2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4. 제1 항제3 호중 제5 조제3 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한 자 <p>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안 날부터 30日 이내에 賦課權者 에게 異議 를 제기할 수 있다</p> <p>④第2項의 規定 에 의한 過怠料處分 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 에 의하여 異議 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 는 지체없이 管轄法院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 은 非訟事件 節次法 에 의한 過怠料 의 裁判 을 한다</p> <p>⑤第3項의 規定 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 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 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 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 한다</p>	<p>부칙< 제6444 호1999.6.30></p>	<p>부칙 제39 호, 1999.8.9></p>
<p>부칙 < 제5667 호, 1999.1.21></p>	<p>부칙< 제6444 호1999.6.30></p>	<p>부칙 제39 호, 1999.8.9></p>
<p>第1條 (施行日) 이 법 은 1999年 7月 1日 부터 施行 한다</p>	<p>제 조(시행일) 이 영은 1999 년 월 일 부터 시행한다</p>	<p>제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p>
<p>第2條 (다른 法律 의 廢止) 農産物檢査法 은 이를 廢止 한다</p>	<p>제 조(다른 법령의 폐지) 농산물검사법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p>	<p>제 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 및 해양수산부령은 이를 폐지</p>
<p>第3條 (農水産物 의 標準規格 등에 관한</p>	<p>제 조(검사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p>	<p>조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經過措置)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표준出荷規格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規格으로 본다</p> <p>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수산물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原産地의 表示品目으로 본다</p>	<p>제11조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종류별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3조 제1항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시행령"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으로 한다</p> <p>제14조 제1항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을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법"으로 한다</p> <p>제15조 제1항의 제목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을"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제1항 중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심의회"를 "농산물 가공·산업육성 심의회"로 "30 인 이내"를 "20 인 이내"로</p>	<p>1. 농산물검사법 시행규칙</p> <p>2. 농산물검사규격규칙</p> <p>3. 농산물검사료규칙</p> <p>4. 농산물검사공무원자격전형규칙</p> <p>5. 농산물검사규격심의위원회규칙</p> <p>6.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p> <p>7. 국립수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p> <p>제16조 품질인증표지에 관한 경과조치</p> <p>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는 2001년 2월 1일까지 10년의 기간 동안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7.31)</p> <p>제17조 조사공무원의 증표에 관한 경과조치</p> <p>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 관련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1999년 1월 0일까지 2년의 기간 동안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공무원</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4條 (檢査 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에 의 하여 檢査 를 받은 農産物 은 이法 에 의 하여 檢査 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9條 의 規定 에 의한 檢査公務員 은 第20條 의 規定 에 의한 檢査員 의 資格 이 있는 것으로 본다</p> <p>③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第13條 의 規定 에 의하여 표시받은 檢査結果 또는 교부받은 檢査證明書 는 第21條 의 規定 에 의하여 표시받거나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p>	<p>하며 동조제 항제 호 마목중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을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p> <p>제 조의 의 제목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의 구성 을(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의 구성 으로 하고 동조제 항중 " 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심의회 를 " 수산물가공산업육성심의회 로 하며 동조제 항제 호 다목중 "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로 한다</p>	<p>의 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p> <p>제 조(원산지표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5제 조 및 5제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제 23 조 및 2제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된 것으로 본다</p> <p>②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5제 조 및 5제 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기준에 의하여 원산지표시가 된 포장재는 2000 년 2 월 1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p>
<p>第5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및 종전의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 에 관한法律 의 規定 에 의하여 行政機關 이 행한 처분 그 밖의 行政機關 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 그 밖의 行政機關 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法 에 의한 行政機</p>	<p>제 조제 항중 " 15 인이하 를 10 인이하 로 한다</p> <p>제1 조제 항중 "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 을"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원 으로 한다</p> <p>제2 조제 항 후단을 삭제한다</p>	<p>제 조(검사증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농산물검사법시행규칙 8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인은 이를 999 년 2 월 1 일까지 3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표시인과 함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第4條의 題目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審議會)" 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 로 하고 同條第1項 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 를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審議會" 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 로 "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審議會" 를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 로 하며 同條第2項 本文 중 "各 審議會" 를 "審議會" 로 하고, 同項第1號 중 "産地加工支援對象者의 지정, 傳統食品의 品目指定" 을 "傳統食品의 品目指定" 으로 하며 同項第2號·第3號 및 第5號 를 각각削除 하고, 同項第6號 중 "農水産食品" 을 "農水産物加工品" 으로 한다</p> <p>第5條第2項 을 削除 하고 同條第3項 을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4項 本文 중 "産地加工 支援對象者 로 지정된者" 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p>	<p>제3 조제 항제 호 가목중 법 제 조제 1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및 산지가공지원대상자의 지정에 관한 을"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에 관한 권한 으로 하고 동호 나목 내지 라목 동항제 호 가목 및 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항제 호중 국립농산물검사소창 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하고 동항제 호 나목중 " 농림축산특산물 을" 특산물 로 하고 동항제 호 본문중" 다음 각목의 농산물에 관한 업무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을" 다음 각목의 권한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 플 로 하고 동호 가목중"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를" 농산물전통식품의 품질인증심사 및 인증품관칙 로 하고 동 조제 항제 호 제 호 제 호 및 동 조제 항제 호를 각각 삭제한다</p> <p>제4 조를 삭제한다</p>	<p>제 2제 조제 호 및 2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p> <p>1. 농업 농촌기본법 1제 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p> <p>2. 농업 농촌기본법 1제 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p> <p>국 ⑤ ㉞ 생략</p> <p>제 조 생략</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者"로 한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의 對象者가 加工品生産을 위한 工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工場設置 地域을 管轄하는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事業計劃書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第6條第4項·第8條 및 第9條를 각각 削除한다.</p> <p>第3章의 題目 중 "農水産物"을 "農水産物加工品"으로 한다</p> <p>第12條를 削除한다</p> <p>第13條第5項 但書 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승인을 얻어"를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로 하고, 同條第6項 내지第8項을 각각 削除한다</p> <p>第14條·第15條 및 第15條의 2를 각각</p>	<p>② 대외무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2 제 호 및 제 호중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고시한 기준을 각각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으로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削除 한다.</p> <p>第16條의 題目 중 "規格品" 을 "認證表示 가 된 特産物 甞' 으로 하고 同條 중 " 農水産物 또는 加工品" 을 "農水産物加 工品" 으로, "標準出荷規格 이 표시된 農 水産物 또는 認證表示 가 된 特産物 甞 을 "品質認證表示 가 된 特産物 甞' 으로 한다.</p> <p>第17條·第17條의2·第17條의3 및第 18條를 각각 削除 한다</p> <p>第19條第1項 중 "農水産物加工技術 甞' 의 보급과 農水産物 및 加工品 의 品質 管理 또는 標準規格化 의 促進 을 위하여 "를 "農水産物加工技術 甞' 등의 보급과加 工品 의 品質管理 를 위하여 로 한다</p> <p>第22條·第23條第2號 내지 第4號 및 第24條를 각각 削除 한다</p> <p>第25條 중 "第22條 및 第23條 또는第 24條" 를 "第23條" 로 한다</p> <p>第26條를 削除 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②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그職務範圍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5條第30號 및 第6條第25號 중 "農水 각각 "農水産物品質管理法" 으로 한다</p> <p>③人蔘産業法 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18條 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 을 "農水産物品質管理法" 으로 한다</p> <p>第8條 (다른 法令과의 關係) 이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農産物檢査法 또는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 및品質管理에關한法律이나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法에 그에 해당하는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法 또는 이法の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부칙 < 제6191 호, 2000.1.21 ></p> <p>이法은 2001年 3月 1日 부터施行 한다</p>	<p>부칙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7165 호, 2001.3.27 ></p>	<p>부칙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제5 호, 2001.3.28 ></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6378호, 2001.1.26></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 제1항 중 "農水産物" 을 "農産物(親環境農業育成法 제6조 제항의 규정에 의한 親環境農産物 중 一般親環境農産物 이 아닌 親環境農産物 을 제외한다" 로 한다.</p> <p>부칙(인삼산업법 <제6380호, 2001.1.26></p>	<p>제 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p> <p>③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 조 제 항 본문 및 동 조 제 항 중 "국립수산물검사소창 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으로 한다"</p> <p>④ 및 ⑤ 생략</p> <p>부칙< 제7230 호 2001.5.29></p> <p>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인삼산업법시행령 < 제7242 호 2001.6.22></p>	<p>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p>제 조 생략</p> <p>제 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p> <p>②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 조 제 조 각호외의 부분 1제 조 각호외의 부분 4제 조 제 항 및 4제 조 제 항 제 호 중 "국립수산물검사소창 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으로 한다"</p> <p>③ 내지 ⑤ 생략</p> <p>부칙 제89 호 , 2001.6.30></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5조 생략</p> <p>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8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地理的特産品 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農林部승인하는 표시방법 외에 인삼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p>	<p>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 및 ③ 생략</p> <p>④(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에 제 ②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 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p> <p>제6조 제 ②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적용) 제 28조 제 ②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도에 시행한 농산물검사원의 자격전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부터 적용한다</p> <p>부칙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 제95, 호 2001.7.31 ></p> <p>④(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⑤ 내지 ⑥ 생략</p> <p>⑦(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의 제 호 종 생산조건 을 기관 명 으로" 기관 명 을 인증번호 로 하고 동표의 제 호 다목종 생산조건 별 인증표지 를 인증표지 로 한다</p> <p>농림부령 제39 호 및 해양수산부령</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수산물품질관리법 <제6399 호, 2001.1.29></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7조 생략</p> <p>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農水産物品質管理法" 을 "農産物品質管理法" 으로 한다.</p> <p>제1조, 제2조제 호· 제 호 내지 제 호, 제3조제1항· 제2항제 호 및 제 호, 제2장의 제목, 제 조제 항 및 제 항, 제5조제1항 및 제 항 제 조제 항 제8조제1항 및 제 항 제 조제 항제 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제 호 내지 제</p>	<p>부칙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 제7351 호 2001.9.1></p> <p>제 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 조 내지 제 조 생략</p> <p>제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명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을"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으로 한다.</p> <p>제 조 및 제 조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을 각각" 농산물품질관리법 으로 한다.</p> <p>제 조 제5 조제 항제 호 제 조제 항 제 호 및 제2 조제 항 제 항을 각각 삭제한다.</p> <p>제 조의 제목 제2 조제 항제 호 내지 제</p>	<p>제9 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 조중 2001년 9월 0 "일 을 "2001년 2월 1 "일 로 한다</p> <p>부칙 제00 , 호 2001.10.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 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제2 조제5 호중 "함은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 을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品 (水産物 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 로 한 加工品 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p> <p>제2 조제6 호중 "生産·採取 또는 捕獲 된 國家·地域 또는 海域" 을 "생산 또는 採取 된 국가 또는 지역" 으로 한다</p> <p>제2 조제7 호 제3 조제2 항제3 호 제6 조의 제목 및 제1 항 내지 제3 항 제7 조 본문·제1 호·제2 호 및 제3 호 제8 조제1 항 내지 제3 항 제8 조제2 항제3 호 및 제3 호중 "遺傳子變形農水産物" 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 로 한다</p> <p>제3 조제1 항중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 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品質管理審議</p>	<p>제 조제 항중" 농산물심의회 및 수산물심의회 를" 심의회 로 한다</p> <p>제 조 제3 조 및 제6 조제 항중 농산물심의회 또는 수산물심의회 를 각각 " 심의회 로 한다</p> <p>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②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의 위원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각각 지명하는 자로 한다</p> <p>제 조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③ 분과위원회가 심의회에서 위임받아 심의 의결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p> <p>제0 조제 항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각각 을" 농림부장관 소속하에 로 한다</p> <p>제0 조제 항 제2 조제 항제 호 제 항 제3 조 제4 조제 항 제 항 제15 조제 호 제6 조제 항 제3 조제</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 제6595 호, 2002.1.14 ></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p>	<p>산품 로 한다</p> <p>제7 조의 제 항 및 제 항중 표시대상농수산물 을 각각 표시대상농산물 로 한다</p> <p>제2 조제 항중"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으로 한다</p> <p>제3 조제 항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하" 부과권자 라 한다</p> <p>을" 농림부장관 으로 하고 동조제 항 및 제 항중" 부과권자 는 을 각각 농림부장관 으 로 한다</p> <p>② 내지⑥ 생략</p> <p>제 조 생략</p> <p>부칙< 제7674 호2002.7.13 ></p> <p>①(시행일 이 영은2002 년 월5 부터 시행한다</p> <p>②(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p>	<p>부칙 제21 호, 2002.7.22 ></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농산물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 제6816 호 2002.12.26 ></p> <p>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 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17 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을 적용한다</p>	<p>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제2 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3 제 호 가쪽1) 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부칙 < 제8071 호 2003.7.29 ></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제8312 호 2004.3.17 ></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p>	<p>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농산물명예감시원은 4제 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p> <p>부칙 제47 호, 2003.9.25 ></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부칙 < 제7675 호 2005.8.4 ></p>	<p>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8594 호2004.12.3 ></p> <p>제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 조 및 제 조 생략</p> <p>제 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① 생략 ②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p> <p>제 조제 항제 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 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 구원 및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 한 한국식품연구원</p> <p>⑬ 내지<42> 생략</p> <p>제 조 생략</p> <p>부칙(제9279 호2006.1.16)</p>	<p>부칙 제15 호, 2006.1.25 ></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이 법은 2006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친환경농업육성법 <제7996 호, 2006.9.27></p> <p>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 내지 제6 조 생략</p> <p>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산물품질관 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 조제1 항중 " 농산물(「 친환경농업육 성법」 제16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한 친 환경농산물중 일반친환경농산물이 아닌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다" 을 " 농산물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 조제 항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을 제외한 다)" 로 한다</p> <p>부칙 <제8103 호, 2006.12.2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제0103 호 2007.6.26)</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유임산물 매각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29 호, 2006.6.3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61 호, 2007.6.29></p>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p>이 법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이 영은 2007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11 조 (시행) 이 규칙은 2007 년 6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12 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는 별지 5제 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목 차

별표 1.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131
별표 2. 검사대상농산물의 종류별 품목	132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133

[별표 1]

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제19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 기준으로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생산자조직·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의 구성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되, 동 구성원이 소속된 조직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해 구성원의 위반의 정도를 감안하여 처분을 경감하거나 당해 구성원에 대한 처분기준보다 한단계 낮은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표준규격품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표준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3)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표시정지 6월
(4) 당해 표준규격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6월	-	-

나. 품질인증품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품질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품질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품질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다. 우수농산물인증품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 법조문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라. 이력추적관리품

행정처분대상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 조	시정 명령	표시정 지 1월	표시정 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 조	표시정 지 1월	표시정 지 3월	등록 취소
(3) 농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 조	표시정 지 3월	등록 취소	-
(4)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 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 조	등록 취소	-	-
(5)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 조	등록 취소	-	-

마. 지리적특산품

행정처분대상	해당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 조	시정 명령	표시정 지 1월	표시정 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 를 한 때	법 제11 조	표시정 지 1월	표시정 지 3월	등록 취소
(3)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1 조	표시정 지 3월	등록 취소	-
(4)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 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1 조	등록 취소	-	-
(5)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의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한 때	법 제11 조	등록 취소	-	-

[별표 2]

검사대상 농산물의 종류별 품목(제28조제2항관련)

1. 정부가 구매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구매 하는 농산물
가. 곡 류 : 벼·겉보리·쌀보리·콩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라. 과실류 : 사과·배·단감·감귤
마.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바. 잡사류 : 누에씨·누에고치
2. 정부가 수출·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등이 정부를 대행하 여 수출·수입하는 농산물
가. 곡 류
(1) 조곡 : 콩·팥·녹두
(2) 정곡 : 현미·쌀
나. 특용작물류 : 참깨·땅콩
다. 채소류 : 마늘·고추·양파
3. 정부가 구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곡류 : 현미, 쌀, 보리쌀

[별표 3]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제3항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2배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가. 법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나.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다. 법 제7조의5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서 법 제7조의5제4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1호	300만원
라.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열람 또는 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마.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2호	300만원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2호	500만원
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점검 또는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2호	500만원
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3호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자.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방법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4호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
차. 법 제28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 결과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자	법 제38조 제1항제5호	800만원

3. 제2호자목 및 차목의 과태료의 세부부과기준

가. 국산농산물, 수입농산물등

- (1)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가) 과태료 부과금액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물량(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고 있는 물량을 포함한다)에 적발 당일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나) (가)의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농산물의 매입가격에 3할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하되, 부과되는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나) 과태료부과금액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나.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1)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가) 가공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 준 액(연간매출액)	과태료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이상위반
1억원 미만	30	60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50	100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100	200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	200	400
6억원 이상 8억원 미만	300	600
8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0	800
10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500	1,000
12억원 이상 14억원 미만	600	1,000
14억원 이상 16억원 미만	700	1,000
16억원 이상 18억원 미만	800	1,000
1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900	1,000
20억원 이상	1,000	1,000

1) “2차이상위반”이라 함은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2) 연간매출액은 처분 전년도에 당해 품목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신규영업·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 전년도에 1년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분기, 전월 또는 최근의 1일 평균 매출액중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연간매출액을 추계하여 산정한다.

4) 1개업소에서 2개품목 이상이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각 품목의 연간매출액을 합산한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나)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 가 (1)의 기준을 준용하여 부과한다.

(2)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가)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을 부과한다.

(나) (가)의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소단위는 5만원으로 하고, 5만원 이상은 천원 미만을 절사하여 부과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목 차

별표 1. 품질인증표시	137
별표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37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38
별표 3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139
별표 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	140
별표 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142
별표 3의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	142
별표 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	143
별표 3의7.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	144
별표 4. 지리적 특산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	145
별표 5. 검사표시인	145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	146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147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관한 처분기준 ...	149
별표 9. 농산물의 검정항목	149
별표 10. 수수료	150

[별표 1]

품질인증표지(제10조제2항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品자 표시)

- (1) 도형의 가로 길이(왼쪽끝과 오른쪽끝의 폭 : W)를 기준으로 모든 획의 폭은 $10/100 \times W$ 로 한다.
- (2) 내부도형(네모형)의 폭은 가로 및 세로 모두 $20/100 \times W$ 로 한다.
- (3) 각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인증표지의 색상과 문자의 색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품질인증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법인으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되고 품질인증 관리부서를 갖춘 생산자단체일 것

나. 인력

- (1) 품질인증의 심사업무 및 품질인증의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 2인 이상을 포함한 품질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갖추는 것
- (2) 심사원은 다음 (가) 내지 (다)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일 것
 - (가)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품질인증 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기사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다) 농업관련 기업체·연구소·기관·단체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품질인증품의 계측 및 분석 등을 위하여 3~4개의 시·군 단위별로 10㎡이상의 검정실을 설치할 것. 다만,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검정실의 수 및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3. 장비

검정실별로 다음의 장비를 갖추는 것. 다만, 장비는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장 비 명	최소비 치기준 (대개)	조 건
◦저울	1	자체보유
- 첫달림 0.1g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 첫달림 20g이하, 끝달림 40Kg이상	1	
◦사동기	1	"
◦시료균분기	1	"
◦시험용정미기(정맥기)	1	"
◦미립투시기	1	"
◦Micro Meter	1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50	"
◦감정접시(원형)	각1	"
◦표준그물체(1.4mm, 1.7mm)	조	"
◦정곡용 색대(Ø13mm)	2	"
◦당도계	1	"
◦지름판	1	"
◦Incubater	1	"
◦잔류농약 속성분석용 장비	1조	자체보유 또는 공인시험 연구기관에 분석의뢰 가능
◦적외선 수분측정기	1	"

4. 품질인증업무규정

품질인증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나. 품질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 다. 품질인증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심사원의 준수사항 및 심사원의 자체관리 감독 요령
- 마.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15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제7조 제4항제1호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품질인증을 허위로 한 경우	법제7조 제4항제2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품질인증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법제7조 제4항제2호			
(1)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인증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2)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심사원으로 하 여금 품질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3) 기타 품질인증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별표 3의2]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5조의3관련)

1. 표지도표



인증기관 :
인증번호 :



인증기관 :
인증번호 :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표지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지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글자 색상은 검정색(Black 100)으로 한다.
- (2) 잎사귀 모양의 색상은 연두색(Cyan 76 + Yellow 91)으로 한다.
- (3) GAP 모양의 색상은 청색(Cyan 91 + Magenta 43)으로 한다.



마. 표지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인증기관:
인증번호:

나. 표시사항 : 산지(시도·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우수농산물인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우수농산물관리의 심벌 로고와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나목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로고 : 로고크기는 포장재에 맞출 수 있으나, 로고형태 및 글자표기는 변형할 수 없다.

나.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 등 원산지표시규정에 의하여 기재

다. 품목(품종)「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라.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마.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을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바. 생산자(작목반명) : 생산자성명 또는 작목반명, 주소, 전화번호

사.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3의3]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제15조의5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우수농산물관리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자를 2인 이상 갖출 것
- (2)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역할과 자세, 우수농산물관리관련 법령, 우수농산물관리시설기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우수농산물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 환경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자

2. 시설

-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은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건축물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과 원료 및 완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작업장	작업장은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작업실을 말하며, 선별, 저장시설 등은 분리되거나 구획(컨막이커튼 등에 의하여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1)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고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다) 내벽은 내수성으로 설비하고,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이 번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천정은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이나 먼지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문은 견고한 내수성 재질로서 청소가 용이하여야 한다.			
	(바) 채광 또는 조명은 작업환경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안에서 악취 유해가스 매연증기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환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작업장의 출입구 및 창문은 밀폐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공정에 분진, 분말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거하는 집진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5) 작업장내 배관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수확 후 관리 설비	(1) 농산물을 수확 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시설은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구비 관리되어야 한다.			
	(2) 농산물 취급설비 중 농산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매끄럽고 내부식성이어야 하고, 구멍이나 균열이 없으며 세정 및 소독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냉각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4) 취급설비는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한다.			
수처리 시설	(1) 수확 후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지하수법」의 음용수 이상(재활용수를 사용할 경우는 정화)이어야 한다.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동물사육장 기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수확 후 세척에 사용되는 물은 1년에 1회 이상 분석하여 음용수 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한다.			
	(3) 용수저장탱크는 밀폐가 되는 덮개(가능하면 잠금장치) 등을 설치하여 오염물질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저장(예냉) 시설	저장(예냉)시설은 농산물 수확 후 원물 및 농산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저온시설을 말한다. 다만, 대상 농산물이 저온 저장(예냉)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벽체 및 천정의 내벽은 내수성 단열 판넬로 마감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창문이나 출입문은 조류, 설치류와 가축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냉장(냉동, 냉각)이 필요한 농산물은 냉기가 잘 흐르도록 적재가 가능한 파레트 등을 구비하고 적절한 온도 관리가 되어야 한다.			
	(4) 냉장(냉동, 냉각)실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장치의 감온봉은 가장 온도가 높은 곳이나 온도관리가 적절한 곳에 설치하며 외부에서 온도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기준		품목군		비고
		비세척	세척	
수송 운반 설비	(1) 운반차량은 농산물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의 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송 및 운반에 사용되는 용기는 세척이 쉽고 필요시 소독과 건조가 가능하여야 한다.			
	(3) 수송, 운반, 보관 등 물류기기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위생 관리	(1) 화장실은 작업실과 분리하여 수세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 세척시설과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시설(일회용 티슈를 사용하는 곳은 제외)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은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적절한 청소 설비 및 기구를 전용 보관장소를 두어 비치하여야 한다.			
기타 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떨어진 곳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단순세척을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관리 유지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시설 및 기계설비 작업 흐름도, 관리기록대장 등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규정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업무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관리방법 마련
- 나.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시설 및 장비 보완 추진
- 다. 우수농산물의 사후관리
- 라.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자체관리 감독
- 마. 우수농산물관리시설 근무자 교육
- 바.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3의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15조의6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인증대상 농산물을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에 의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때 (1)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관리할 경우 (2)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하여 관리할 경우	법 제7조의3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별표 3의5]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5조의7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조직

- (1)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 (2) 인증업무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나. 인력

- (1) 인증심사원을 5인 이상(상근 2인 이상) 갖출 것
- (2) 인증심사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 인증관련 법령, 인증심사기준, 인증심사 실무 등의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가) 농학계열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인증심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 (나) 농학계열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농림환경 분야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단,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라) 농업관련 기업체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농산물의 품질관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자
 - (마) 법 제2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시 설

- 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분석시설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분석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인증업무규정

인증업무의 사업계획에는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인증의 절차 및 방법
- 나. 인증의 사후관리
- 다. 인증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인증심사원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자체관리 감독 요령
- 마. 인증심사원 교육
- 바.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증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1) 인증업무 방침의 수립
 - (2) 인증 장기 계획 및 발전방향 수립
 - (3) 인증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
- 사. 그 밖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3의6]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제15조의8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인증기관 소속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만을 대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회	2회	3회
가. 법 제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어느 하나가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법 제7조의4 제3항제2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다. 우수농산물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때	법 제7조의4 제3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별표 3의7]

농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 및 표시사항(제15조의13관련)

1. 표시도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화살표는 연두색으로(Cyan 30 + Yellow 100) 한다.
-  (2)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 한다.
-  (3)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나. 표시사항 : 산지(시·도, 시·군·구), 품목(품종), 중량·개수,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심벌 로고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나목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산지 :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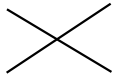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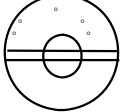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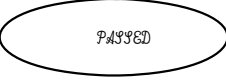
나. 품목(품종) 「 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 또」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다. 중량·개수 : 포장단위의 실중량 또는 개수

라. 등급 :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규격을 사용

마. 생산자 : 생산자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조직명, 주소, 전화번호

바. 이력추적관리번호 :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종 류	도 안	구 분	치 수(mm)	
			1호	2호
재검사	재	중 형 획폭	30 25 4	15 13 2
말 소		각변 획폭	40 4	20 2
중 자	씨	중 형 획폭	30 25 4	15 13 2
특별기호	 ※ 원내에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특별표기를 삽입한다.	원 직경 원획 폭 자획폭	40 3 3	20 1.5 1.5
검사일부인 (국내용)	 ※ 원내 상단에는 검사기관명을 삽입한다 ※ 두줄 중앙에는 검사일자 자를 삽입한다 ※ 원내 하단에는 검사원 번호를 삽입한다	외원직경 내원직경 일자인란폭	28 16 8	14 8 4
검사일부인 (수출용)	 ※상단에 검사기관명(영자)을 삽입한다. ※하단에 국명(영자)을 삽입한다	중경 획경	35 50	18 25

[별표 6]

농산물검사 유효기간(제35조관련)

종 류	품 목	검 사 시행시기	유효기간 (일)
곡 류	벼·콩	5. 1~9. 30	90
		10. 1~4. 30	120
	겉보리·쌀보리·팥·녹두·현 미·보리쌀	5. 1~9. 30	60
		10. 1~4. 30	90
	쌀	5. 1~9. 30	40
		10. 1~4. 30	60
특용작물류	참깨·땅콩	1. 1~12. 31	90
과 실 류	사과·배	5. 1~9. 30	15
		10. 1~4. 30	30
	단감	1. 1~12. 31	20
	감귤	1. 1~12. 31	30
채 소 류	고추·마늘·양파	1. 1~12. 31	30
잡 사 류	누에씨	1. 1~12. 31	365
	누에고치	1. 1~12. 31	7
기 타	농림부장관이 검사대상 농산물로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검사 유효기간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7]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7조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 검사인력의 최소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검사계획량을 일정 기간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구 분	종 류		검사인력 최소확보기준
국산농산물 (수출용 농산물을 포함한다)	곡 류	포장물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산 물	검사장소 1개소당 1인
	정 곡	검사장소 2개소당 1인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검사장소 5개소당 1인
수입농산물	공 통		항구지 1개소당 3인

2. 시 설

검사견본의 계측 및 분석, 감정기술수련, 검사용 기자재 관리, 검사표준품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 하는 사무소별로 10㎡ 이상의 감정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 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중 검사대행 품목에 해당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규격의 장비는 종류 또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용할 수 있다.

가. 기본 검사장비

종 류	장 비 명	최소비체기 준(대개)	
		사무 소당	검사 원당
공 통	저울		
	-첫달림 0.01g 이하, 끝달림 300g 이상(산물을 제외한다)	1	
	-첫달림 0.1g 이하, 끝달림 600g 이상	1	
	-첫달림 5g 이하, 끝달림 10kg 이상(산물을 제외한다)	1	
	시료균분기(과실 채소류를 제외한다)	1	
	용적중 측정기(산물을 제외한다)	1	
	Micro Meter(곡류를 제외한다)	1	
검사증인(해당품목)			1조
휴대용 수분측정기			1

나. 종류별 검사장비

구 분	종 류	종 목	장 비 명	최소비체기 준(대개)	
				사무 소당	검사 원당
국산 농산물 (수출 용을 포함 한다)	곡류 검사	조곡 (포장 물)	동력제현기	1	
			기준분동	1	
			감정접시(원형)	50	
			줄체(1116)	각 1조	
			세로눈판체(1110 , 1112 , 1114 , 1115)	각 1조	
			표준그물체(1114 , 1117)	각 1조	
			등근눈체(4110 , 5115 , 7117 , 7118)	각 1조	
			색대(조곡용 1116 , 정곡용 1113)		
			인습기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비치기준(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국산 농산물 (수출을 포함 한다)	곡류 검사	조곡 (산물)	◦ 자동계량기(중량, 수분 동시측정용)	1	
			◦ 시료건조기(건조함수 30칸 이상)	1	
			◦ 단립식 또는 적외선 수분측정기. 다만 1회 측정 용량이 5g 이상이고 12% 35% 범위의 수분함량 측정이 가능한 수분측정기로 대체 가능	1	
			◦ 동력제현기	1	
			◦ 감정접시(원형)	50	
			◦ 줄체(1.6mm)	각1조	
			◦ 세로눈판체(2.0mm , 2.2mm , 2.4mm , 2.5mm) 단, 보리수매장소에 한함	각1조	
			◦ 표준그물체(1.4mm , 1.5mm)	각1조	
	◦ 색대(조곡용 Ø16mm , 정곡용 Ø13mm)		각 1개		
	◦ 인습기		1		
	◦ 판수동 저울(첫달림 50g 이하, 끝달림 100kg 이상)	1			
	정곡	◦ 도정도 감정기구(5칸 이상)	1		
		◦ 표준그물체(1.4mm , 1.5mm)	각 1조		
		◦ 색대(조곡용 Ø16mm , 정곡용 Ø13mm)		각 2개	
		◦ 인습기		1	
		◦ 감정접시(원형)	50		
	특작 서류 검사		◦ 향온건조기(105℃)	1	
			◦ 시료분쇄기(믹서기)	1	
			◦ 그물체(0.84mm)	1	
			◦ 검사봉		1
		◦ 색대(Ø13mm)		2	
	과실 채소 류 검사		◦ 향온건조기(105℃)	1	
			◦ PH메타	1	
			◦ 당도계		1
			◦ 지름판		1

구분	종류	종목	장 비 명	최소비치기준(대개)	
				사무소당	검사원당
수입 농산물	곡류 검사		◦ 정미 정맥기	1	
			◦ 발아시험기	1	
			◦ 미립투시기	1	
			◦ 입체현미경	1	
			◦ Motomco 수분측정기	1	
			◦ 이중관색대	1	
			◦ 곡류검사용 표준체 일체	1	
			◦ 색대(Ø13)		2
	특작 서류 검사		◦ 입체현미경	1	
			◦ 그물체(0.84)	1	
		◦ Motomco 수분측정기	1		
		◦ 유분 및 산가분석기	1		
		◦ 색대		2	

4. 검사업무규정

검사업무규정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감독 요령
- 마. 기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별표 8]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제39조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1호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1)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장비·인력 또는 조직 중 2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나. 검사를 허위로 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2호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검사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법 제26조제4항제2호	경 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1)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3월	사업정지 6월 또는 지정취소
(2) 검사품의 재조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1월	사업정지 3월 또는 지정취소

[별표 9]

농산물의 검정항목(제42조관련)

구	분	검정항목	
측정	(1)품위	◦ 정립, 피해립, 이중중자, 용적중, 이물, 싸라기, 입도, 이중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비율, 색깔비율, 결점과율, (조)회분, 사분 등	
시험	(2)발아율 (3)도정수율	◦ 발아율, 발아세(맥주보리에 한한다) 등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도정률 등 ◦ 맥류의 정백률 등	
분석	(4)일반성분	◦ 수분, 산가, 산도, 단백질, 지방, 조섬유, 당도 등	
	(5)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질산염 등	
	(6)유해성중금속	◦ 비소, 납, 주석, 아연, 수은 등	
	(7)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짐 등	
	(8)아플라톡신	◦ 아플라톡신 B ₁ 등	

[별표 10]

수수료(제46조제1항관련)

1. 품질인증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품질인증 신청 - 동일인이 2건 이상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추가 1건당 15,000원씩 추가	1	30,000

2. 우수농산물인증 수수료

가. 신청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 신청	1	50,000

나. 인증심사원의 출장비

-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 인증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2)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고, 출장인원은 2인 이하로 한다.
- (3)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 인증신청인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신청	1	100,000

4.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신청 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신청	1	200,000

5. 지리적표시 등록수수료

항 목	건수	수수료(원)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1	100,000

6. 농산물 검사수수료

종류별	품목	중량	단위	수수료(원)
곡 류	◦ 쌀	40kg	대	30
	◦ 녹두	40kg	대	30
	◦ 기타 곡류 전품목	40kg	대	20
서 류	◦ 전품목	40kg	대	20
특 용 작물류	◦ 참깨	40kg	대	40
	◦ 기타 특용작물 전품목	40kg	대	20
과실류	◦ 전품목	15kg	상자	20
채소류	◦ 고추	20kg	대	30
	◦ 기타 채소류 전품목	20kg	대	20
잡사류	◦ 누에씨	-	-	없 음
	◦ 누에고치	10kg	-	20
수입농산 물류	◦ 정곡	1톤		70
	◦ 기타 수입농산물류 전품목	1톤		6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수수료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7. 농산물 검정수수료

구 분	검정항목	단위	1항목당 수수료(원)	
측청	(1) 품 위	◦ 정립, 피해립, 이중중자, 이물, 용적중, 싸라기, 입도, 이중곡립, 분상질립, 착색립, 사미, 세맥, 다른 종피색, 과균비율, 색깔비율, 결점과율,	1항목	1,000
		◦ (조)회분	1점	400
		◦ 사분	1점	1,400
시험	(2) 발아율 (3)도정수율	◦ 발아율, 발아세	1항목	2,500
		◦ 미곡의 제현율, 현백률	1항목	3,600
		◦ 맥류의 정백률	1항목	5,700
분석	(4)일반성분	◦ 수분	1점	400
		◦ 단백질	1점	1,800
		◦ 지방	1점	2,600
		◦ 조섬유	1점	600
		◦ 산가	1점	3,000
		◦ 산도, 당도	1항목	1,400
	(5)무기성분	◦ 칼슘, 인, 식염, 나트륨, 칼륨 등	1성분	3,900
		◦ 질산염	1점	21,200
	(6)유해중금속	◦ 비소, 납, 아연, 구리, 수은 등	1성분	5,000
	(7)잔류농약	◦ 클로로피리포스, 엔도설판, DDT, 프로시미돈, 다이아지논, 카벤다질 등. 다만,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	1성분	38,000
(8)아플라톡신	◦ 아플라톡신 B ₁	1성분	38,000	
(9)항생물질	◦ 항생제	1성분	25,000	
	◦ 합성항균제	1성분	25,800	
	◦ 호르몬제	1성분	180,300	

주)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검정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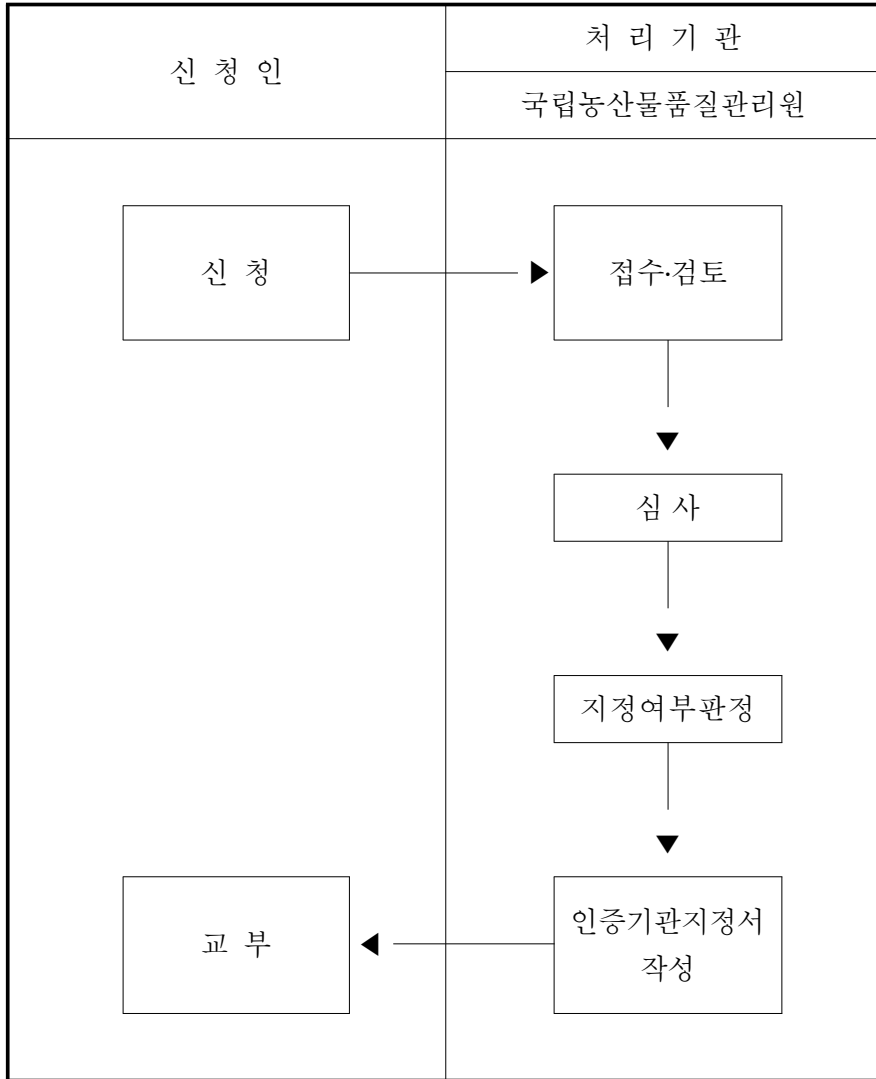
목 차

별지 1. 품질인증신청서	155
별지 2. 품질인증서	156
별지 3.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156
별지 4.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57
별지 4의2.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158
별지 4의3. 우수농산물인증서	159
별지 4의4. 우수농산물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159
별지 4의5.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신청서	160
별지 4의6.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서	161
별표 4의7.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신청서	162
별지 4의8. 우수농산물인증기관 지정서	163
별지 4의9.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163
별지 4의10.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	164
별지 4의11.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 변경신청서	165
별지 4의1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165

별지 5.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	166
별지 6. 지리적표시등록증	167
별지 7. 농산물유통조사 공무원증	168
별지 8. 농산물검사신청서	168
별지 9. 꼬리표	169
별표 10. 농산물검사원자격관리대장	170
별지 11. 농산물검사원증	171
별지 12. 검사증명서	171
별지 13. 농산물검사 이의신청서	173
별지 14.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174
별지 15. 농산물검사기관 지정신청서	174
별지 16. 농산물검정 신청서	175
별지 17. 농산물검정 증명서	176
별지 18.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	176
별지 19.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177
별지 20.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행대장	178
별지 21.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78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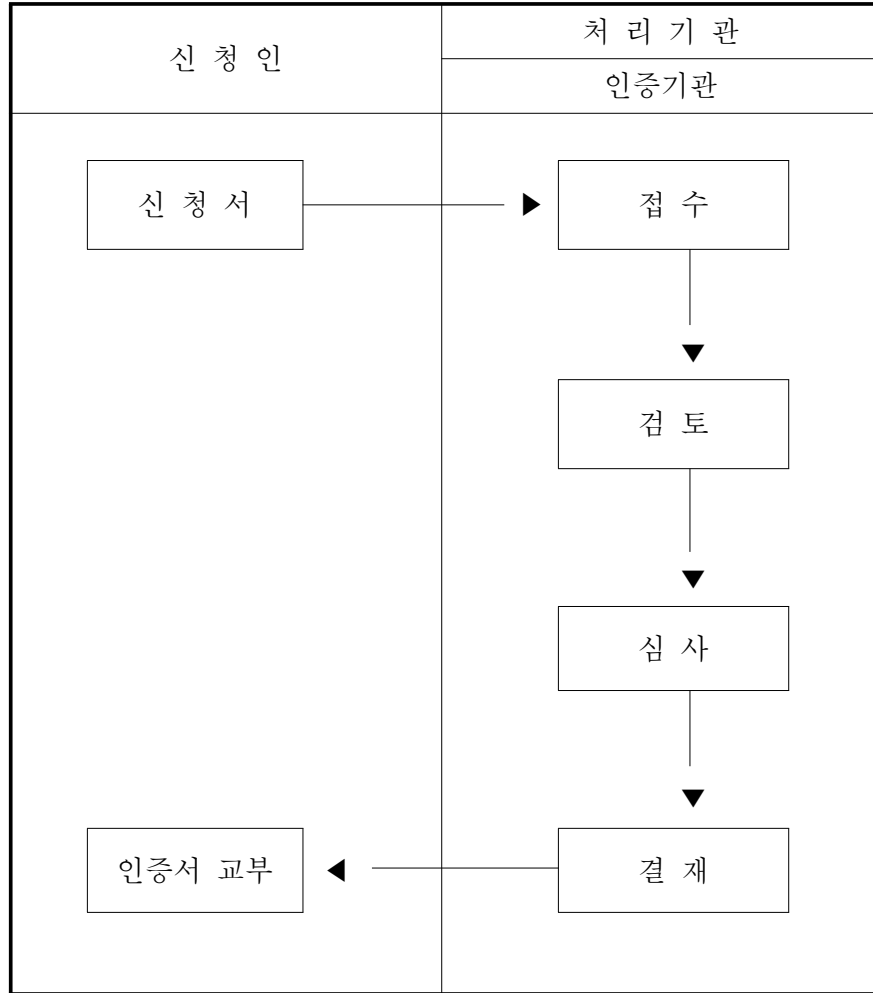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2.7.22>

품질인증기관지정서			
지정번호			
기 관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지정일자			
인증업무 범위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앞 쪽)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06.1.25, 개정 2006.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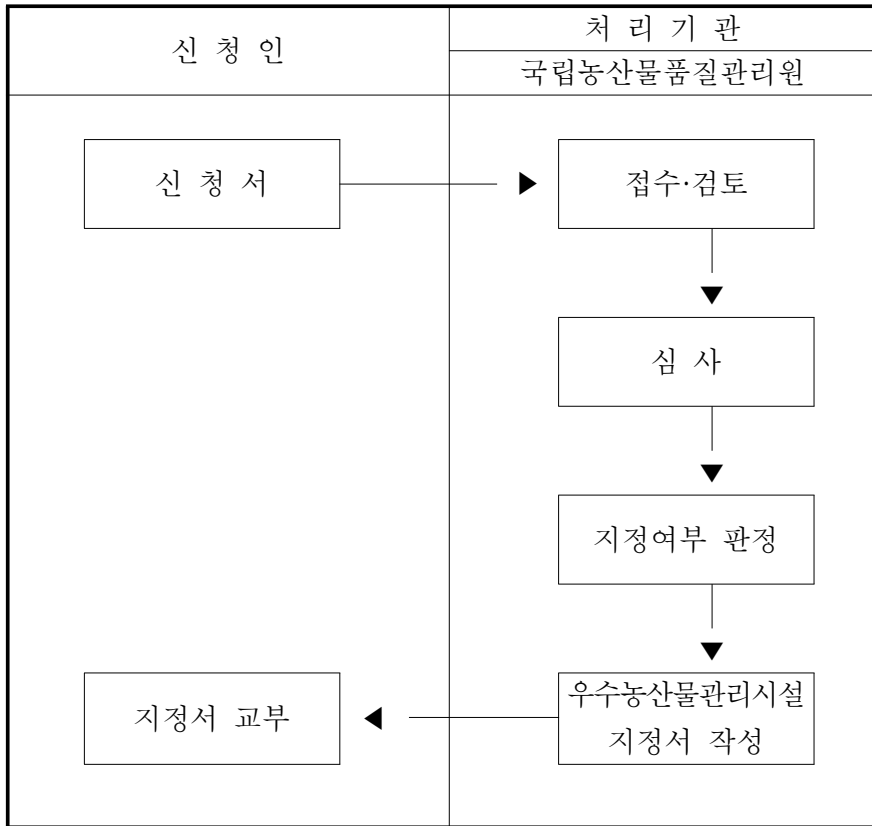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 청 인	시설명		
	조직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 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농산물관리시설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 하 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및 인력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우수농산물 관리시설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4. 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10만원 (수입인 지뒤쪽 붙임)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 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 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수 수 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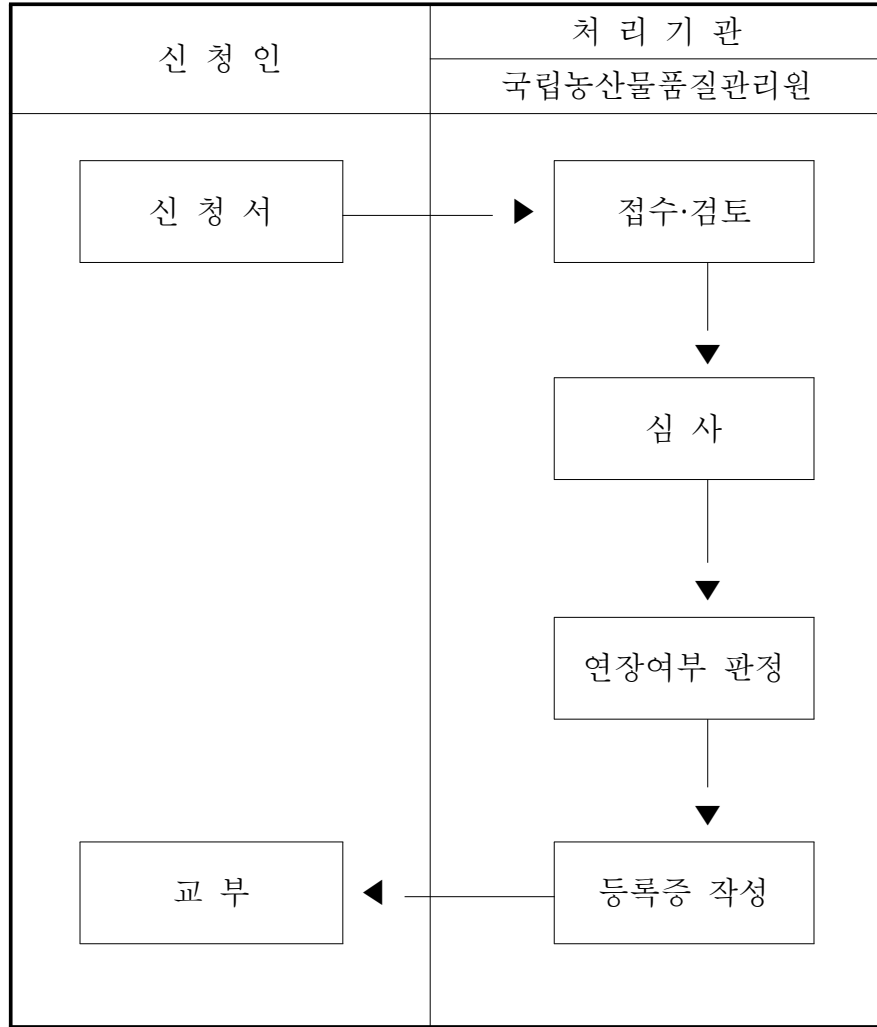
[별지 제4호의6서식] <신설 2006.1.25>

우수농산물관리시설지정서			
지정번호			
관리시설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지정일자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p>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2.7.22>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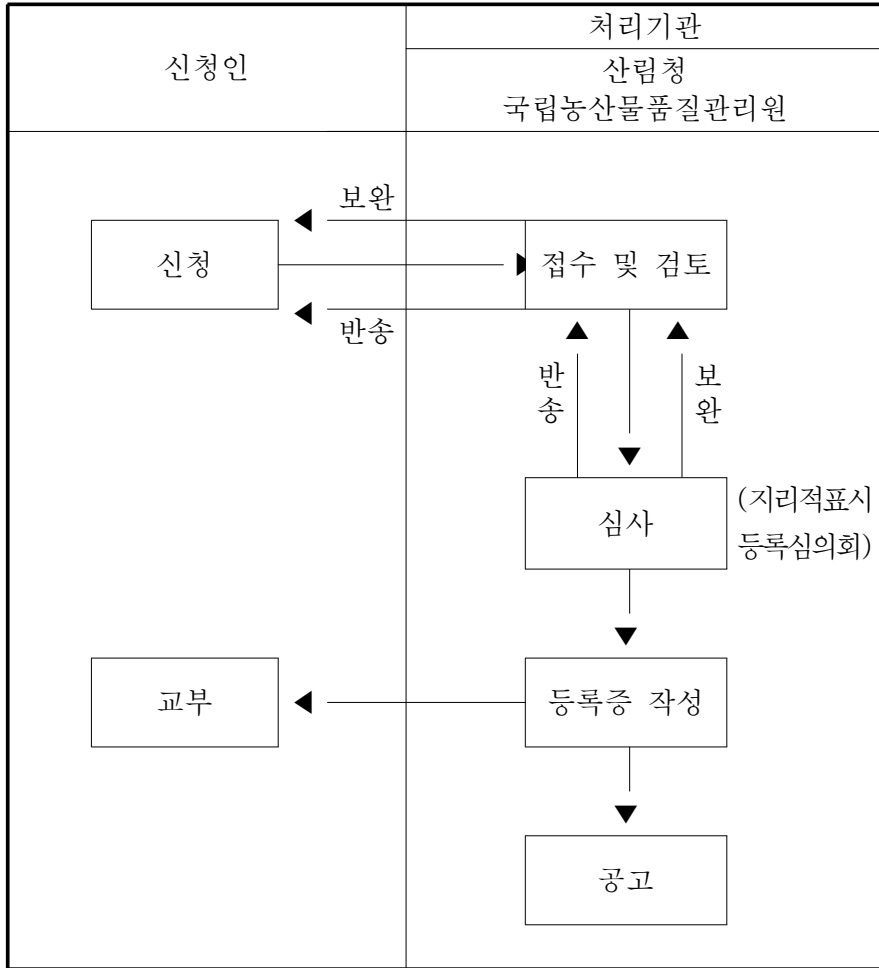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년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					
	재배면적	ha	생산지역		생산량	M/T
	포장또는가공 공장소재지					
지리적표시 등록의 주요내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1부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 10만원 (수입인지 부과)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서식] < 개정 2002.7.22 >



K P G I
K P G I
지리적표시등록증

1. 등록번호 :
2. 등록품목 :
3. 등록명칭 :
4. 대상지역 :
5. 등록자 :
6. 주소 :

농산물관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2.7.22>

(앞쪽)

제 호 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증 소속 : 직급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유통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사진 (2.5cm×3cm)
---	-------------------

주) 색상 : 연노랑색

90mm×55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0조제3항·제13조제3항·제18조제4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판매업자·보관업자 또는 가공업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사업장·창고·서류 등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2.7.22>

(앞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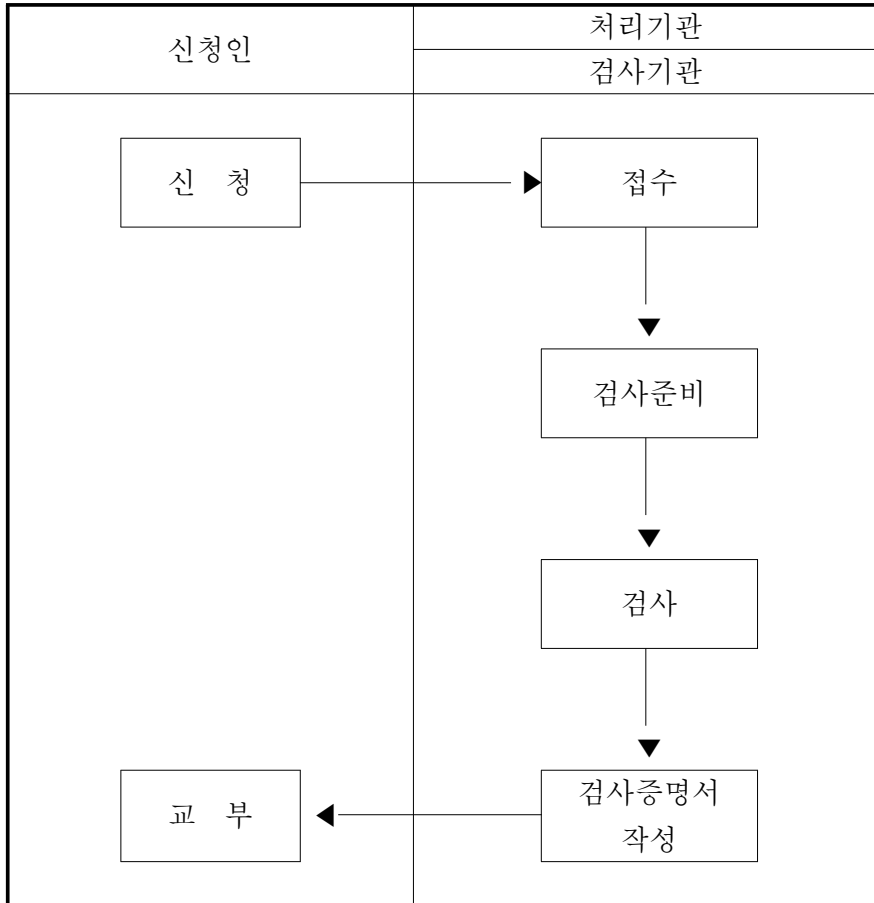
농산물검사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품목	산지	생산연도	포장구분	포장단위무게	수량	검사희망일	검사희망장소	
비고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검사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2.7.22>

꼬리표

○ (철사 덧붙임)

품목 (품종)		
생산연도		
산지 (원산지)		
실증량		
생산자	성명	
	주소	
검수일부인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div style="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40px; margin: 0 5px;"></div> <div style="margin-left: 5px;">▼</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35mm</p>		
45mm×105mm (보존용지(1종) 120g/m ²)		

주) 꼬리표를 포장재의 입구에 대고 꿰매거나 포장재의 표면에 붙일 경우에는 철사 덧붙임은 생략되며, 첩부용 꼬리표의 지질·크기·문자크기 및 표시사항의 배열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2.7.22>

농산물검사원자격관리대장

검사원 번호	소속	직 급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임용 연월일	현근무지	자격취득 근거					자격취소 근거					확 인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 류	잠사 류	곡류	과실· 채소류	특작· 서류	종자 류	잠사 류	

364mm×257mm

(일반용지(1종) 120g/m²)

- 주) 1. 검사원 번호는 검사기관별로 구분하여 부여한다.
 2. 소속, 직급, 근무지란은 변동사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연필로 기재한다.
 3. 자격취득일란에는 자격취득근거와 날짜를 기재한다.
 4. 자격이 취소된 경우 해당란에 두 줄의 선을 긋고, 취
 소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후,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2.7.22> (앞쪽)

농산물검사원증	
자격구분 검사원번호 소속 성명 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검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사진 (2.5×3cm)
○○○장 인	

주) 색상 : 연노랑색

90mm×60mm
(일반용지(1종) 120g/m²)

(뒤쪽)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2.7.22>

1. 일반농산물

제 호 ()검사증명서							
수검자	성명						
	주소						
구분	포장단위 무게	등급별 수량					비고
						계	
합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검사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2. 수출용농산물

제 호			
수출검사증명서 (Inspection Certificate)			
수검자 (Applicant)		생산지 (Area of product)	
		수출지 (Destination)	
L/C 번호 (L/C No.)		품목 (Kind)	
E/L 번호 (E/L No.)		규격 (Specification)	
검사기관 (Inspector authorized)		수량 (Quantity)	
합격증번호 (Certificate No.)		등급 (Inspection result)	
수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commodities have been passed in the export inspection)			
날짜 (Date) (Certificated by)			
○○○장 인 (영문자 표기)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3. 수입농산물

제 호			
수입검사증명서			
수검자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품목	원산지	포장자재 및 포장단위무게	신청수량
적재선(기)명	검사장소	검사일자	검사원
검사결과내용			
등급별 수량			비고
		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3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2.7.22>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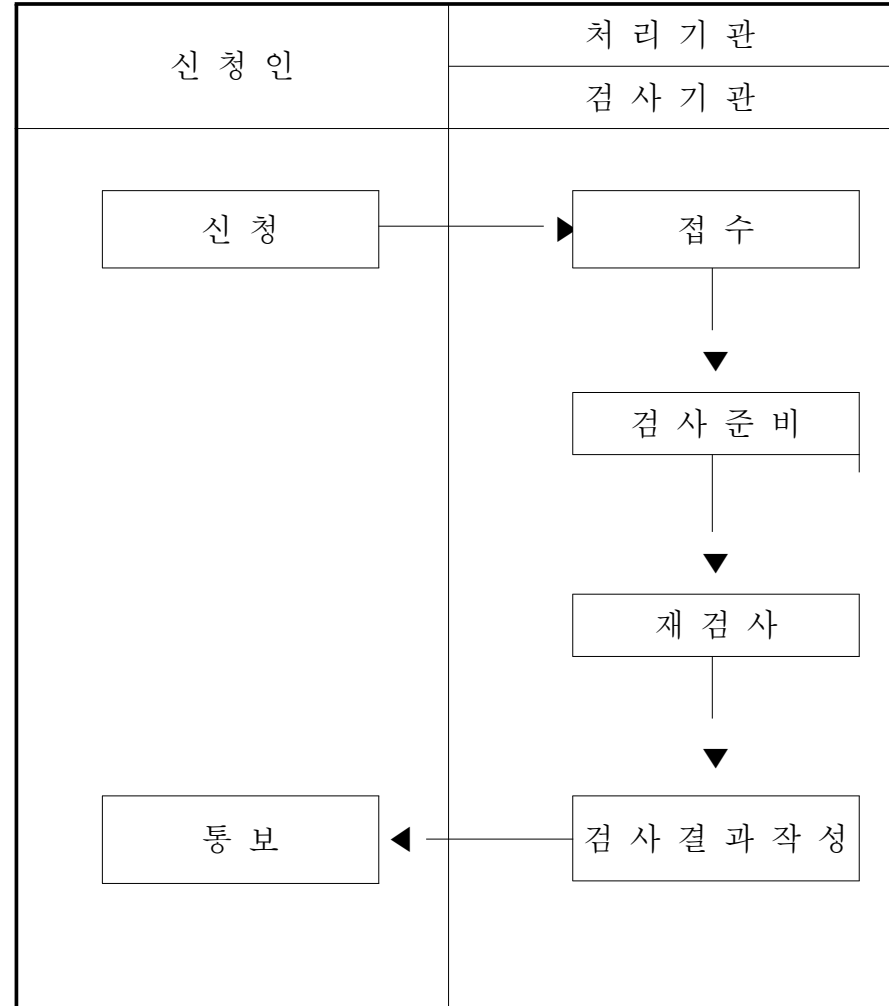
농산물검사이의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검사품목				
검사등급 (검사내용)				
검사수량				
검사연월일				
검사원성명 또는 검사원번호				
이의신청 사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2.7.22>

(기 관 명)				
우○○○-○○○주소/전화(○○○)○○○-○○○○/전송(○○○)○○○-○○○○				
담당부서명 :		직위 또는 직급 :	담당자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제 목 : 이의신청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				
귀하께서 이의신청하신 농산물에 대한 검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인	성 명			
	주 소			
품 목	신청수량	이의신청 내용		검사결과
		등급	기타	

끝.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2.7.22, 2006.6.30> (앞 쪽)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지정검사희망 기관명(단체명)						
검사대상 종류및품목	검사관할 지 역	검 사 장소수	검 사 예상량	검사기간	검 사 인 력	검사시설 및 장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하는 경우 신청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 계획서 1부 3.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02.7.22>

(앞 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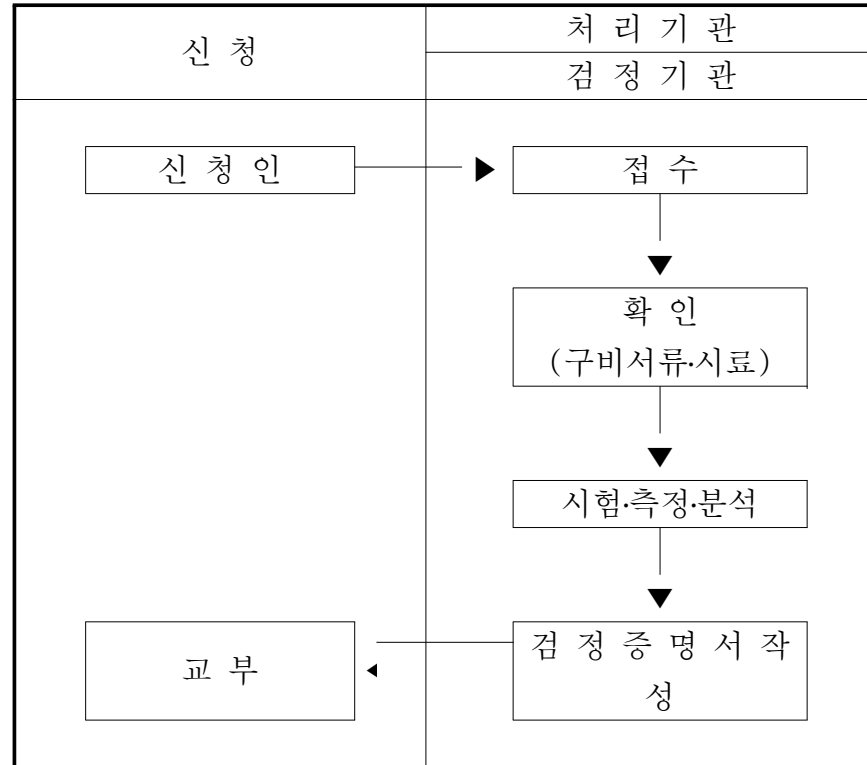
농산물검정신청서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검정품목			
시료접수및중량			
산지및생산자			
채취연월일			
검정항목			
검정목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품목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첨부 : 검정용 시료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 쪽)

검정수수료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2.7.22>

제 호 농산물검정증명서			
신청인	성 명 (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검 정 품 목			
시 료 점 수 및 중 량			
검 정 항 목			
검 정 목 적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한 농산물의 시료에 대한 검정성적임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03.9.25, 개정 2007.6.29>

(앞 쪽)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응시원서(원본)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농림부장관 귀하

① 수험번호 ※	(한글)	(한자)	③ 응시지역	
②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주민등록지)			⑥ 연락처	전화번호: - 이 메 일 : -
⑦ 학 력	() 학교 (재학, 중퇴, 졸업)			
⑧ 제1차 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응시원서(부분)

⑨ 수험번호 ※	(한글)	(한자)	⑩ 응시지역	
⑪ 성 명			⑫ 주민등록번호	-
⑬ 제1차 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⑭ 연락처 주소 및 소속명칭			⑮ 연락처	전화번호: - 이 메 일 : -

⑯ 사 진
(3cm×4cm)

제 회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수험표

⑰ 수험번호 ※	(한글)	(한자)	⑱ 응시지역	
⑲ 성 명			⑳ 주민등록번호	-
㉑ 제1차 시험 면제신청	()년도 제()회 제1차 시험에 합격			
㉒ 시험일시 및 장소	※ 일시 :		장소 :	

㉓ 사 진
(3cm×4cm)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m²)

(뒤 쪽)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제출일자 : 응시원서 원본과 수험표에 제출일자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성명 ②①⑱ : 한글로 기재하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반드시 한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지역 ③⑩⑱ : 응시희망지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 5. 주민등록번호 ④⑫⑳ : 주민등록번호를 공란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6. 주소 : ⑤는 주민등록지 주소를, ⑭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주소를 기재하되, 통·반·번지까지 기재하고, 근무지 소속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7. 연락처 ⑥⑮ : 실제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학력 ⑦ : 최종 학력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9. 제1차 시험 면제신청 ⑧⑬㉑ : 바로 직전의 자격시험에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만 기재하여야 합니다.
- 10. 사진란 ⑯㉒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3cm×4cm 규격의 동일원판으로 탈모 상반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를 잘못 기재하여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행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응시원서 및 기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당 회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력, 제1차 시험 면제신청 등 기재사항은 최종 합격결정 이후에도 허위입이 판명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6에 따라 자격이 취소되고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시까지 본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2. 필기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기재된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자는 (1)수험표, (2)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 만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4.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계산기·전자수첩·워드콕·휴대폰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응시자가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시험이 중지 또는 무효처리되며, 당해 자격시험 시행일부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일	자격증 발급시 최종 합격자의 준비물
제1차 시험 : . . .	수험표 및 수험표에 사용한 동일원판
제2차 시험 : . . .	사진으로 3cm×4cm 2매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6.1.25>

	국가자격증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	--

(겉표지 뒷면)

(겉표지 앞면)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사 진 3cm×4cm </div> <p>(성 명)</p>	발행번호 제 호 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증 자격증번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품질관리사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	---

(속지 1면)

(속지 2면)

- ①겉표지는 PVC(비닐) 80mm×120mm로 하며 안쪽은 투명한 비닐로 하여 속지를 끼울 수 있도록 하고 바깥 쪽 양 모서리는 약간 둥글게 한다.
- ②속지는 1종 보존용지(120g/m²)로 하며 비닐 안쪽에 끼울 수 있는 크기로 한다.

